

제1회 형사사법포럼 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박용석 법무연수원 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사회자 : 조병인 범죄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10~15:10

제1주제 :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발 표 : 김지영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 최영신 교정·보호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운식 검사교수 (법무연수원)

질의 및 응답

15:10~16:10

제2주제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여

발 표 : 박광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토 론 : 탁희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주원 피해자인권과장 (대검찰청)

질의 및 응답

16:10~16:30 휴식

16:30~17:30

제3주제 :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중점추진방향

발 표 : 김현철 인권구조과장 (법무부)

토 론 :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제관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질의 및 응답

개 회 사

오늘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보화·세계화와 더불어 신종 범죄의 유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방법 및 수단이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와 수사방법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의 중추적 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과 국가 형사정책수립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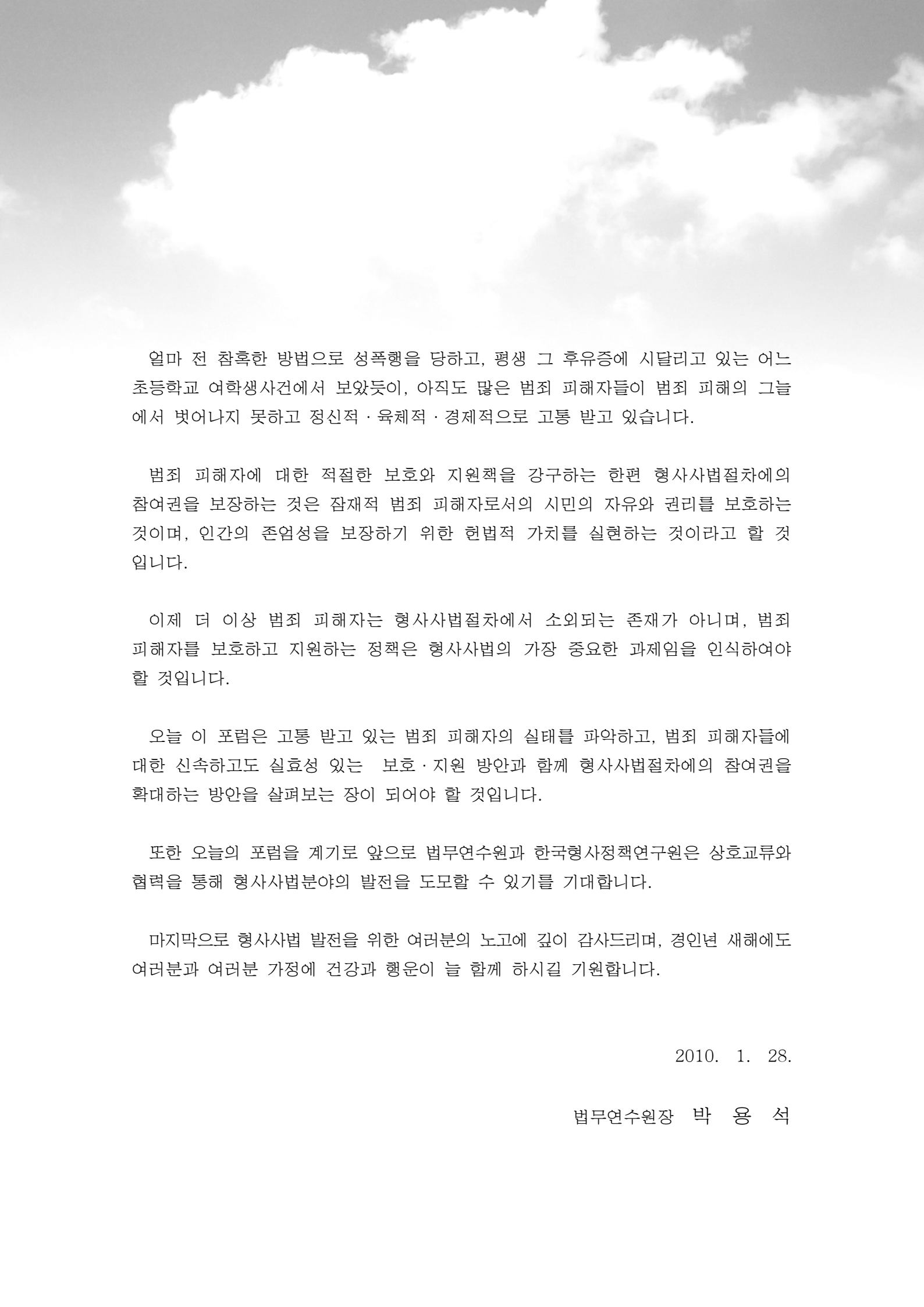
오늘 이 자리는 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인 ‘범죄 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전국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온전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형사사법의 운영 실태를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활동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참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서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고통 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과 함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1. 28.


법무연수원장 박 용 석

존경하는 박용석 법무연수원장님, 그리고 법무연수원의 조성욱 기획부장님을 비롯한 법무연수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형사사법과 관련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석 법무연수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어 상호 발전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형사사법포럼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사법절차상의 보호대책은 현저히 발전한 반면 이들에 의한 범죄 피해자 문제는 소홀히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보다 범죄피해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제3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은 이들이 형사사법절차에 노출되지 않고 그 불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불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예방의 책무를 지는 국가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일차적 피해는 물론이지만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 못지않게 범죄피해자의 재사회화 역시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가 범죄와 함께 그 이후 진행된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경험한 기억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적응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범죄피해자가 겪어야 할 개인적 불행으로 돌리지 않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의 형사사법이 보복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양형은 범죄행위의 정도와 함께 그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형사사법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형사사법포럼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을 촉발하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오늘과 같은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 및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 1.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 상 기

❧ 목 차 ❧

❏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11
II. 연구방법	12
III. 연구결과	15
IV. 결론	33

❏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41
II.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제도	43
III.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의 해석론	48
IV.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참여 개선방안	53
V. 맺음말	56

❏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I. 들어가며	61
II. 범죄피해구조금 요건 완화 및 구조금 증액	64
III.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	73
IV.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85
V.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89
VI.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초기지원 강화	93
VII. 마치며	99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김 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김 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국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성과를 산출하여 왔다. 첫째, 법학과 형사정책학자들에 의한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법제도 연구(배철효, 양경규, 2007; 양경규, 2007; 오영근, 이천현, 2005;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김현철, 2005 등), 둘째, 사회과학자들이 수행한 여성과 미성년자,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피해자인 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노인학대 등-의 피해특성과 보상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김지영, 김기범 2007년; 김지영 2009년; 김상균 2000; 송광섭 2004; 이수정, 강윤희 2002), 셋째, 국민일반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조사(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피해자 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실증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강력범죄 중에 특히 살인범죄는 외국에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며(Catherall, 2005; Freeman, 1996; Murphy, Braun, Tillery, Cain, Johnson, & Beaton, 2005 등), 강도와 방화범죄도 가해자에 관한 연구 및 발생추세에 관한 조사는 있으나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신체적·재정적 피해를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희소하다. 또한 범죄의 결과는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고통을 주는데, 지금까지 피해자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국한되어 있었다.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살인범죄뿐 아니라, 기타 강력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이 혈연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다면, 가족 전체의 안녕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의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후유증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피해

* 본 발표문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자들은 피해를 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생활전반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며,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범죄유발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당하는 일차적 피해와 이차피해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바,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로 피해자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후유증을 의욕저하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면역력 약화 등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욕구에 관해서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전국 57개 범죄피해센터에 연계된 강력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선행연구결과 및 예비연구결과,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강력범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 사법기관과 언론,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피해,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제외한 총 44개 피해자센터에 설문을 발송하였는데 각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된 피해자의 수를 합하여 총 500부의 설문이 발송되었다. 회수된 설문은 총 188부로 회수율은 37.5%였다. 188부 중 부실응답 및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설문 10부를 제외한 178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명, 여성이 124명으로 여성이 69.7%, 남성이 30.3%로 여성이 남성의 2배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50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37명(20.9%), 10대가 25명(14.1%), 30대가 23명(13%), 20대가 21명(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15명(8.5%), 10대 미만도 6명(3.4%)이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

	빈도(명)	%
남성	54	30.3
여성	124	69.7
계	178	100.0
10대 미만	6	3.4
10대	25	14.1
20대	21	11.9
30대	23	13.0
40대	50	28.2
50대	37	20.9
60대 이상	15	8.5
계	177	100.0

미상 1명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총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이 중 9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지원을 받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중에서 선정되었고, 2명은 강력범죄 피해자 자조모임의 참여자 중에서 면접에 응한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심층면접에 응한 사람들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8명이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명, 40대가 7명, 60대가 2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범죄 피해자가 5명, 강도상해 및 상해 피해자가 3명, 방화 및 실화 피해자가 2명, 성폭력 피해자가 1명 등이었고, 면접 대상자는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었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 하였다. 심층면접에 응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범죄 피해는 대부분 면접 당시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들(7사례)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3년 이내인 경우는 2사례, 사건 발생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2사례 등이었다. 이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피해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접대상자의 인적특징과 피해특징

사례 번호	면접자 특징			피해 특징			
	성별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	피해시기	장소	피해내용
〈사례 1〉	남	67	피해자 가족	살인	2003. 10.	피해자 자택	연쇄살인범에 의해 어머니, 아내, 아들 살해
〈사례 2〉	여	62	피해자 어머니	살인	2005. 10	피해자 자택 앞 놀이터	딸이 남자친구에게 살해
〈사례 3〉	남	47	피해자 아버지	살인	2008. 10.	피해자 거주지	칼에 6회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
〈사례 4〉	여	47	본인	강도상해	2007. 5.	피해자 운영 호프집	폭행으로 인해 4개월 입원.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목 디스크로 일을 못함
〈사례 5〉	여	44	피해자 부인	살인	2009. 5.	가해자 소유 야산	16억 사기. 남편 살해 후 암매장
〈사례 6〉	남	34	피해자 형	상해	2009. 9.	한강 고수부지	안면 함몰로 전치8주 상해
〈사례 7〉	여	43	피해자 부인	살인	2009. 7.	피해자 거주지	이웃사람에 의해 칼로 살해
〈사례 8〉	여	43	본인	실화	2009. 1.	피해자 주거지	300-4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
〈사례 9〉	여	38	피해자 딸	강도상해	2009. 3.	피해자 주거지	어머니 치료 중 사망 / 아버지 두부, 척수손상으로 장애발생, 우울증상
〈사례 10〉	여	49	본인	성폭력	2009. 7.	피해자 운영 술집	폭행(늑골 6개 손상) 후 강간, 25만원
〈사례 11〉	여	44	본인	방화	2009. 7.	피해자 주거지	전셋집 전소, 남편과 이혼, 아이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Ⅲ. 연구결과

1. 범죄발생 실태

조사대상자들이 범죄피해를 입은 연도를 살펴보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서 2009년까지가 159명(94.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가 8명(4.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0.6%)으로 나타났다.

〈표 3〉 사건발생 연도

	빈도(명)	%
1995~1999	1	0.6
2000~2004	8	4.8
2005~2009	159	94.6
계	168	100.0

미상=10명

사건이 발생한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여름이 49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이 47명(29%)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을과 겨울은 각각 33명(20.4%)으로 동일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4〉 사건발생 계절

	빈도(명)	%
겨울(12월-2월)	33	20.4
봄(3월-5월)	47	29.0
여름(6월-8월)	49	30.2
가을(9월-11월)	33	20.4
계	162	100.0

미상=16명

범죄발생장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택 이외에 자주 가는 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나(65명, 36.7%), 이는 자택의 비율과 별 차이가 없었다(62명, 35%). 다음으로

처음 간 장소가 28명(15.8%), 가끔 가는 장소가 22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건발생 장소

	빈도(명)	%
주택	62	35.0
주택 이외에 자주 가는 곳	65	36.7
가끔 가는 장소	22	12.4
처음 간 장소	28	15.8
계	177	100.0

미상=1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6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친구, 애인, 회사동료 등 평소 알던 사람인 경우가 64명(41%), 친족관계는 24명(15.4%)로 나타났다.

〈표 6〉 피해자-가해자 관계

	빈도(명)	%
친족관계	24	15.4
친구, 애인, 회사동료 등 평소 알던 사람들	64	41.0
전혀 모르는 사람	68	43.6
계	156	100.0

미상=22

피해범죄유형별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살인범죄의 경우는 가족/친척과 더불어 직장이나 친구 등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97%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족/친척 및 아는 사람을 합한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의 경우에도 가족/친척 및 아는 사람을 합한 비율이 80%를 차지해 강도범죄를 제외하고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은 절반이상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가해자관계

(단위 : N(%))

	친족관계	평소 알던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합계
살인	7 (10.0)	29 (41.4)	34 (48.6)	70 (100.0)
강도	0 (0.0)	1 (3.0)	32 (97.0)	33 (100.0)
성범죄	12 (27.9)	12 (27.9)	19 (44.2)	43 (100.0)
방화	5 (50.0)	3 (30.0)	2 (20.0)	10 (100.0)
계	24 (15.4)	45 (28.8)	87 (55.8)	156 (100.0)

$$\chi^2 = 44.075^{***}, df=6, p<.001$$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범죄유형을 보면, 10대미만집단과 10대집단의 경우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또한, 중년층에서 노년층을 이루는 40대와 50대, 60대 집단의 경우에는 살인과 강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피해범죄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피해범죄유형별 연령대

(단위 : N(%))

범죄 유형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살인	0 (0.0)	5 (6.7)	10 (13.3)	10 (13.3)	22 (29.3)	20 (26.7)	8 (10.7)	75 (100.0)
강도	0 (0.0)	2 (4.7)	3 (7.0)	3 (7.0)	16 (37.2)	14 (32.6)	5 (11.6)	43 (100.0)
성범죄	6 (12.8)	18 (38.3)	7 (14.9)	6 (12.8)	9 (19.1)	0 (0.0)	1 (2.1)	47 (100.0)
방화	0 (0.0)	0 (0.0)	1 (8.3)	4 (33.3)	3 (25.0)	3 (25.0)	1 (8.3)	12 (100.0)
계	6 (3.4)	25 (14.1)	21 (11.9)	23 (13.0)	31 (21.2)	37 (20.9)	15 (8.5)	177 (100.0)

$$\chi^2 = 69.687^{***}, df=18, p<.001$$

2. 범죄로 인한 심리적 피해

범죄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혹은 범죄를 상기시키는 사람이나 장소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상자 중 138명(80.2%)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나 사람들을 피하였으며, 110명

(65.1%)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또한 107명(64.5%)의 응답자들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을 마주칠까 두렵다고 했으며, 이웃이나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진다고 응답한 사람도 99명(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명(47.9%)의 응답자들은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렵다고 응답해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9〉 사회적 관계의 문제

	그렇다	아니다	계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진다	99 (57.9)	72 (42.1)	171 (100.0)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	110 (65.9)	57 (34.1)	167 (100.0)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다	80 (47.9)	87 (52.1)	167 (100.0)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다	110 (65.1)	59 (34.9)	169 (100.0)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과 마주칠까 두렵다	107 (64.5)	59 (35.5)	166 (100.0)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나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138 (80.2)	34 (19.8)	172 (100.0)

강력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건강한 대학생집단 및 정신질환자집단과 비교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평균이 28.60(9.7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환자집단이 39.10(10.01)으로 나왔으나, 범죄피해자집단은 환자집단보다 높은 43.81(6.16)로 나와 세 집단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집단 간 비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28.60	9.7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환자	39.10	10.01
범죄피해자	43.81	6.16

대학생, 정신질환자의 값은 이선미(2001).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지-행동 집단치료 효과. 학위논문.

강력범죄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 대학생의 평균이 11.40(6.51), 정신질환자집단이 19.45(4.19)로 나타났는데, 범죄피해자집단의 평균은 18.81(8.62)로 일반대학생 평균보다 훨씬 높아, 정신질환자집단과 비슷한 평균을 보여준다.

〈표 11〉 한국판일반정신건강(KGHQ) 평균값의 집단 간 비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11.04	6.51
정신질환자	19.45	4.19
범죄피해자	18.81	8.62

대학생, 정신질환자의 값은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1, 한국사회복지학 46(9), p210-235.

3.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

범죄 당시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61명을 제외하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을 입은 사람들이 총 38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증상을 입은 사람들이 23명(13.3%), 사망에 이를 정도의 증상을 입은 사람들이 21명(12.1%),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이 13명(7.5%),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가 12명(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신체적 피해의 정도

	빈도(명)	%
없다	61	35.3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	12	6.9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13	7.5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	38	22.0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증상	23	13.3
사망에 이를 정도의 증상	21	12.1
기타	5	2.9
계	173	100.0

미상=5명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신체적 피해의 후유증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불면증이 56명(22.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곳의 통증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39명(15.8%),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있는 경우가 36명(14.6%), 두통(35명, 14.2%), 신체적 장애(33명, 13.4%), 소화불량(22명,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로 인한 후유증의 대부분은 불면증이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장애와 눈에 띄는 흉터와 화상을 입은 피해자도 약 30%로 나타났다.

〈표 13〉 신체적 피해의 후유증(중복응답)

	빈도	%
두통	35	14.2
치통	8	3.2
생리불순	8	3.2
소화불량	22	8.9
불면증	56	22.7
신체적 장애	33	13.4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	36	14.6
상해를 입은 곳의 통증	39	15.8
기타	10	4.0
계	247	100.0

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다거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등의 생활 속 변화도 범죄피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총 149명(86.6%)의 응답자들이 강력범죄를 당한 이후, 일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은 한 번의 범죄피해 이후에 또 다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는 응답(129명, 78.2%)이 뒤를 이었고, 감기가 자주 걸린다(59명, 36.4%), 술과 담배에 의지해 건강을 해쳤다(52명, 3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범죄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N(%))

	그렇다	아니다	계
그 사건 이후로 나의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졌다	129 (78.2)	36 (21.8)	165 (100.0)
그 사건 이후로 술과 담배에 의지해 건강을 해쳤다	52 (32.7)	107 (67.3)	159 (100.0)
그 사건 이후로 감기가 자주 걸린다	59 (36.4)	103 (63.6)	162 (100.0)
그 사건 이후로 다른 범죄피해를 입거나 같은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149 (86.6)	23 (13.4)	172 (100.0)

4.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96명, 26%), 다음으로 피해미변상(80명, 21.7%), 치료비용(72명, 19.5%), 이사(62명, 16.8%), 이직(16명,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난품 미회수와 소송비용은 각각 2.7%(10명)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15〉 경제적 피해의 내용(중복응답)

	빈도	%
신용불량	9	2.4
부도	2	.5
생계곤란	96	26.0
도난품미회수	10	2.7
피해미변상	80	21.7
소송비용	10	2.7
치료비용	72	19.5
이사	62	16.8
이직	16	4.3
기타	12	3.3
계	369	100.0

조사대상자들에게 본인이 당한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52명, 34.2%).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9명, 25.7%). 1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도 32명(21.1%)이었다.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가 21명(13.8%), 100만 원 미만이 8명(5.3%)으로 가장 적었다.

〈표 16〉 경제적 피해의 규모

	빈도(명)	%
100만원 미만	8	5.3
100만원 이상-천만원 미만	39	25.7
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2	34.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	13.8
1억 이상	32	21.1
계	152	100.0

미상=26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하여 피해 범죄유형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살인범죄의 경우, 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39.7%), 1억 이상(30.2%)이 뒤를 이었다.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 피해규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34.1%), 두 번째로 높은 피해규모는 1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미만(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0.0%). 방화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100만원미만은 한명도 없었다.

〈표 17〉 피해범죄유형별 경제적 피해규모

(단위 : N(%))

	100만 원 미만	천 만 원 미만	5천 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억 이상	합계
살인	2 (3.2)	12 (19.0)	25 (39.7)	5 (7.9)	19 (30.2)	63 (100.0)
강도	4 (9.8)	12 (29.3)	14 (34.1)	8 (19.5)	3 (7.3)	41 (100.0)
성범죄	2 (5.7)	14 (40.0)	8 (22.9)	4 (11.4)	7 (20.0)	35 (100.0)
방화	0 (0.0)	1 (7.7)	5 (38.5)	4 (30.8)	3 (23.1)	13 (100.0)
계	8 (5.3)	39 (25.7)	52 (34.2)	21 (13.8)	32 (21.1)	152 (100.0)

$\chi^2 = 22.041^*$, df=12, p<.05

5. 범죄로 인한 가족의 해체

범죄로 인해 본인과 가족구성원들이 이혼·실직 혹은 이혼이나 실직의 위기가 있었는지, 자살이나 자살시도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본인이 실직 또는 실직의 위기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의 실직 또는 실직위기 10%(11명), 본인의 이혼 또는 이혼위기(19.1%, 10명), 가족의 이혼 또는 이혼 위기(3.6%, 4명)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18〉 범죄로 인한 이혼·실직·자살(중복응답)

	빈도	%
본인의 이혼 또는 이혼위기	10	9.1
본인의 실직 또는 실직위기	34	30.9
본인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생각	35	31.8
가족의 이혼 또는 이혼위기	4	3.6
가족의 실직 또는 실직위기	11	10.0
가족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	2	1.8
기타	14	12.7
계	110	100.0

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는 가족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6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범죄 이후로 가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118명, 69.8%)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절반을 웃돌았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가족들이 범죄발생 이후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53명, 31.4%)는 것이다. 범죄발생 후 서로 소원해져서 떨어져 산다는 응답이 27명(16.4%), 범죄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 비난했다는 응답도 20명(12.0%)으로 나타나 범죄로 인한 가족해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9〉 가족문제

(단위:N(%))

	그렇다	아니다	계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44 (26.7)	121 (73.3)	165 (100.0)
우리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	20 (12.0)	146 (88.0)	166 (100.0)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53 (31.4)	116 (68.6)	169 (100.0)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	118 (69.8)	51 (30.2)	169 (100.0)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소원해져서 서로 떨어져서 산다	27 (16.4)	138 (83.6)	165 (100.0)

6.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실태

범죄피해자들이 언론이나 사법기관,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입은 2차 피해에 관해 살펴보았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사생활 보도(17.8%)와 사실과 다른 보도(19.9%)가 가장 높았으며, 언론이외 기타 출판물에 나와 가족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우가 7.9%로 가장 적었다. 피해를 입은 응답자들이 느낀 피해의 심각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심각했다.’와 ‘매우 심각했다.’를 합한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사생활 보도로 인한 피해가 14명(46.6%), 오보로 인한 피해가 19명(57.5%),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18명(66.6%), 사생활 침해가 11명(57.9%),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가 7명(38.9%), 기타 출판물에서 입은 피해가 5명(38.5%)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피해자들은 언론의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가장 많았고, 피해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언론의 불공정 보도와 오보,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느꼈다고 응답했다.

〈표 20〉 2차 피해: 언론

	피해사실		심각성				계
	유	무	전혀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 했다	매우 심각 했다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 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30 (17.8)	139 (82.2)	5 (16.7)	11 (36.7)	7 (23.3)	7 (23.3)	30 (100.0)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33 (19.9)	133 (80.1)	7 (21.2)	7 (21.2)	11 (33.3)	8 (24.2)	33 (100.0)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 를 했다	27 (16.6)	136 (83.4)	2 (7.4)	7 (25.9)	10 (37.0)	8 (29.6)	27 (100.0)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19 (11.4)	147 (88.6)	2 (10.5)	6 (31.6)	6 (31.6)	5 (26.3)	19 (100.0)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18 (11.0)	146 (89.0)	4 (22.2)	7 (38.9)	5 (27.8)	2 (11.1)	18 (100.0)
언론 이외 기타 출판물에 나 와 가족의 신상정보가 노출되 는 피해를 입었다	13 (7.9)	151 (92.1)	4 (30.8)	4 (30.8)	3 (23.1)	2 (15.4)	13 (100.0)

수사기관에서 입은 2차 피해를 조사하였다.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느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각했다.’와 ‘매우 심각했다.’라는 응답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재조사로 인한 피해 36명(45.1%),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으로 인한 피해 20명(64.6%),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 22명(51.1%), 취조하듯 무례한 조사 20명(52.6%),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의심 13명(44.8%), 부당한 사건처리 결과 35명(74.5%), 정보 유출 20명(74.1%), 원치 않는 합의 중용 7명(53.9%),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수치심 11명(55.0%),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사 29명(85.3%)으로 나타났다.

재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사, 부당한 사건처리결과, 수사정보의 유출,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 2차 피해: 수사

	피해사실		심각성				계
	유	무	전혀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했다	매우 심각 했다	
수사기관에서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80 (48.2)	86 (51.8)	14 (17.5)	30 (37.5)	27 (33.8)	9 (11.3)	80 (100.0)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하게 했다	31 (18.7)	135 (81.3)	2 (6.5)	9 (29.0)	14 (45.2)	6 (19.4)	31 (100.0)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43 (25.9)	123 (74.1)	4 (9.3)	17 (39.5)	17 (39.5)	5 (11.6)	43 (100.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38 (22.6)	130 (77.4)	4 (10.5)	14 (36.8)	13 (34.2)	7 (18.4)	38 (100.0)
수사기관에서 나나 오히려 가족들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29 (17.5)	137 (82.5)	5 (17.2)	11 (37.9)	6 (20.7)	7 (24.1)	29 (100.0)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부당했다	47 (28.3)	119 (71.7)	7 (14.9)	5 (10.6)	15 (31.9)	20 (42.6)	47 (100.0)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언론이나 주변에 흘렸다	27 (16.6)	136 (83.4)	2 (7.4)	5 (18.5)	15 (55.6)	5 (18.5)	27 (100.0)
수사기관에서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13 (8.0)	150 (92.0)	3 (23.1)	3 (23.1)	4 (30.8)	3 (23.1)	13 (100.0)
수사기관에서 지나친 비속어를 사용하여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	20 (12.1)	145 (87.9)	2 (10.0)	7 (35.0)	8 (40.0)	3 (15.0)	20 (100.0)
수사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34 (20.7)	130 (79.3)	0 (0.0)	5 (14.7)	19 (55.9)	10 (29.4)	34 (100.0)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2차 피해에 관해 조사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의 경우가 19명(11.5%),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해 질문을 받은 경우가 20명(12.1%)으로 나타났는데,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결과되었다.

〈표 22〉 2차 피해: 재판

	피해사실		심각성				계
	유	무	전혀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했다	매우 심각 했다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 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 다	19 (11.5)	146 (88.5)	3 (15.8)	3 (15.8)	8 (42.1)	5 (26.3)	19 (100.0)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 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 을 받았다	20 (12.1)	145 (87.9)	1 (5.0)	5 (25.0)	7 (35.0)	7 (35.0)	20 (100.0)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범죄의 2차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심각했다’와 ‘매우 심각했다’는 응답을 합한 결과, 가해자 측이 나쁜 소문을 흘려서 입은 2차 피해의 심각성이 가장 높았으며(18명, 72%), 다음으로 가해자 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27명, 69.3%)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2차 피해: 가해자

	피해사실		심각성				계
	유	무	전혀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하지 않았다	심각 했다	매우 심각 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20 (12.0)	146 (88.0)	7 (35.0)	2 (10.0)	7 (35.0)	4 (20.0)	20 (100.0)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 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39 (23.6)	126 (76.4)	1 (2.6)	11 (28.2)	12 (30.8)	15 (38.5)	39 (100.0)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8 (4.9)	154 (95.1)	2 (25.0)	1 (12.5)	5 (62.5)	0 (0.0)	8 (100.0)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 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	25 (15.2)	139 (84.8)	3 (12.0)	4 (16.0)	9 (36.0)	9 (36.0)	25 (100.0)

7. 범죄피해자의 욕구

가. 경찰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노력

면접을 통해 나타난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가장 커다란 욕구는 지원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지고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기 힘들다.

네. 근데 당사자는 만사가 귀찮아요. 당장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의욕이 없어요. ... 피해자 지원센터란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서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신문보도를 봐서 금방 알 수 있지않습니까? 하다못해 핏자국이라도 와서 닦아줬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 먼저 와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물어보고, 본인은 경황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친척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아요. ...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찾아보면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사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절차 말고.. 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지양을 해야죠.

<사례 1>

범죄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해 겨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지원을 받은 <사례 8>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가나 사회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이나 그 쪽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었어요. 기초수급자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저희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초수급자라고 발로 안 뛰어도 알아서 해주시는데..

<사례 8>

나. 경제적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요구하는 또 한 가지 사항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생계비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정도로..

<사례 7>

물론 나도 그렇지만 피해자들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것 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도 있고 우울증 걸렸으면 치료할 수 있고, 그 가정이 살기 너무 힘들면 물질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2>

또한 <사례 11>의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의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확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또한 지원기관에서 약속한 지원금액이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면접에 응한 것도 본 연구가 피해자 지원 예산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요. 저도 그런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애들하고 살면 좋겠어요. 지금 사글세방에 살고 있지 않아요. 잠잘 수 있고 애들이랑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지역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번 돈을 집세로 내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 제가 다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해준 상태였고,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처음에 방을 얻는데 보태라고 얼마를 주셨고,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300만원 채택이 되어서 다달이 50만원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는 않아서 제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계비가 되고 애들 교육비가 되는 건데, 그런 절실한 비용들을 지급할 때는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돈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날짜에 맞춰서 나와야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니까요. ... 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사치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 근데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신문에서 봤을 때 나라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적은 돈이고 범죄자들에게는 많은 돈을 책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한 달 정도 전에 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예산을 책정해서.. 범죄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야 신체상의 문제가 없지만 가해를 당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재할하기도 힘든데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범죄자들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자는 부양가족도 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

가적으로 자원단체에서 돈을 각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제가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좀 안정되게 걱정하지 않도록.. 화상을 입는다면 지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신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구요. 그런 돈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범죄자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 9>의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들이 소유한 주택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례 11>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 보상할 수 없다는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 연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거..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걸고넘어지니까 ... 두 분이 벌어서 집 하나를 장만하셨어요. 근데 집이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다 그래요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집이 있어서 안 된다. 그 집도 지금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빼서 쓴 상태예요.

<사례 9>

지원 단체에서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안 된다, 그런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남편이 그랬는데, 만약 주거를 마련해 줬는데 나중에 남편이 형을 마치고 나와서 거기서 살게 된다면 그건 웃기는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야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요. 나중에 거기서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른 민간인들한테 가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건 안정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사례 11>

다. 피해자들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피해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 4>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가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것 때문에 가해자가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례 7>의 피해자 가족은 외출 시 불안함 때문에 신변보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4>의 피해자는 이사를 하고 싶지만 경

체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사할 형편이 아니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빨리 나온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아프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형을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4년 전이라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더 밍고 더 있었으면 하죠. 그 당시에 제가 사는 집 주소를 가르쳐줘 버렸어요. 그 당시에 칼 들고 죽여 버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그 때 기억이 있다면 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적어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사 갈 처지도 아니고.. …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코빼도 다 부러졌었어요. … 그 사람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사례 4>

제일 큰 게 생계비고.. 어디 갈 때 불안해요. 신변보호를 해줬으면 해요. 다닐 때 불안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담감이 있어요. 남편을 잃고 마음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요.

<사례 7>

라.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유되고,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수사기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여러 모습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못지않은 심각한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사항을 고지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랐으며, 수사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수사기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 2>, <사례 1>의 진술내용 참조). 아울러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가 바라는 점은 통화도 해가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을 대충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러고는 끊고...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전화하면 비번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단순폭행사건이라고 대충 대충 하고 그래요. 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범인 잡았으면 하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있어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텐데 형 입장에서는 정말...

<사례 6>

네. 그 장소도 몰랐어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우리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그래야지 왜 안 알려 주냐고 하자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어머님이 물어봤는데도 안 알려준 겁니까?)* 네 ...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안 알려주는 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만이라도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 말고 기관에서 피해자들한테.. 그냥 자기들 조사할 것만 다 하고 장사지내고 나니까 그만이에요.

<사례 2>

마.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마련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서로 만나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례 2>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여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 가족도 고통스러울 것이며, '죽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간에.. 우리가 피해자지만 서로 인사도 좀 시켜주고 화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그 사람들과 원수같이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용서를 했고, 그 쪽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라도 해주면, 화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죽은걸 경찰서에서 얘기해줬으니까 그 부모들이라도 만나게 해서 서로 그런 것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늙어서 남편도 70인데, 죽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죽으면 우리 남편도 좋잖아요.

<사례 2>

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피해자가 있었던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정해 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사례 7>의 피해자 가족의 경우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요.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이예요. (복수심 때문이세요, 아니면 나와서 해꼬지 할까봐 그러세요?) 해꼬지도 그럴지만, 남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똑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사례 7>

사. 신속한 재판

그 밖에 <사례 7>의 피해자 가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그 이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 심리적 안정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피해자들의 경우, 공판이 지연되고 횡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증인 아주머니한테도 언니 좀 나와 달라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판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지연이 되요. 증인이 없으면 지연이 되고.. 저도 일자리에서 빠지고 나와야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사례 7>

IV. 결론

지금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4대 강력범죄의 피해실태와 피해자들의 욕구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범죄피해실태와 피해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의 정책적 방향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개선방향에 관해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에서 범죄피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의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로 인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고 특히, 미성년 자녀, 노인 부모들이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린 자녀와 노인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가족해체의 피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의료지원체계는 의료분과에 소속된 전문위원의 개인적 지원이나 협조에 의존하거나 지역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비를 삭감해주

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지원센터에서만 이러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피해자의 자녀 및 노인부모에 대한 피해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지원에 있어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센터에서도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피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한 탈진과 심장질환, 면역체계의 결함과 같은 장기적 손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 가족의 문제 및 피해자 개인의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 질환까지 범죄피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범죄피해의 개념을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피해자 지원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살인·성범죄만이라도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심리치료가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정신치료의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지역의 병원과 연계하여 사후 정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들이 처음 대면하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센터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홍보가 중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지원센터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지원기관, 첫 대면하는 피해자 지원기관 일 순위는 경찰청의 인권보호센터였으며, 범죄피해자들의 40% 가까운 비율이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활동은 향후 범죄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절반 이상의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발생이후 두 달이 지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에 경찰의 인권보호센터가 피해자에 가장 밀착된 피해자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보호센터에서 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법률적 상담과 정보제공 정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 직후 받아야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개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인권보호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방안,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주지시켜 시기적절하게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연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에도 피해자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신변보호제도는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인지도도 낮았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범죄의 두려움도 심각하지만, 특히 가해자나 가해자가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 못지않은 고통이다. 때문에 주기를 옮기고자 하는 피해자들도 많으나, 비용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변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인력증원은 채용의 확보와 제도정비로 인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사비용의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관 및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피해자 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찾아가는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주위의 시선이나 눈총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 및 언론, 가해자로부터의 인권침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이웃이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포·비치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한 피해자센터 및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홍보물에는 피해자 지원의 기준을 명시하여 어떤 범죄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기관들이 홍보를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심층면접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지고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피해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힘들다. 따라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지원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의 개요와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지원기관에 제공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해자 지원센터 내에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 자조모임이 결성된 곳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센터를 단순히 매달 돈이 나오는 창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조모임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데,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해 지원내용 소개하거나,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자신이 당한 피해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스스로 치유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여섯째, 피해자 복지센터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의 역할을 하면서, 직업교육, 구직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직업교육, 구직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만들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센터안에서 거주한다면, 거주하는 동안 심리적·신체적 외상에 관해 집중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가족간에 정서적 지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 범죄피해로 인한 상흔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가장을 잃거나, 실직한 피해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 김지영, 김기범(2007) 노인 학대의 발생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노인의 특성과 가족 환경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권 3호.
- 김지영(2009),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주년 기념논문집.
- 김상균 (2000), 노인의 범죄피해특성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3.
- 김현철 (2005),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피해자학 연구, 13(1).
- 배철효, 양경규 (2007).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6(1).
- 송광섭 (2004),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 양경규 (2007),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4(1).
- 오영근, 이천현 (2005),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학 연구, 13(1).
- 이수정, 강윤희 (2002). 범죄자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제언: 정신, 심리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0(2).
-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 Catherall, R. C. (2005), *Family stressors: intervention for stress and Trauma*. Routledge.
- Freeman, L. N. (1996), Neglected victims of homicide: The needs of young siblings of murder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6(3).
- Murphy, S. A., Braun, T., Tillery, L., Cain, K. C., Johnson, L. C. & Beaton, R. D. (2005), PTSD among bereaved parents following the violent deaths of their 12 to 28-year-old children: A longitudinal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2(2).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



박 광 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

박 광 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8세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¹⁾을 계기로 또 다시 법관의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형실무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²⁾을 해소하고 체계적·분석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2007년 4월 개정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기준이 2009. 4. 24. 의결·공포되어 2009. 7.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양형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양형’ 또는 ‘형의 양정’이란 행위자의 행위에 범죄성립이 인정될 때 법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³⁾ 여기에서 행위자에 대하

* 이 발표문은 필자가 2009. 11. 28. "한중형사법 쟁점문제 학술토론회"(중국인민대학 주최)에서 발표하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2009 겨울 · 통권 제41호)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1) 이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무자비하게 성폭행당했는데, 이 와중에 어린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어 영구상해를 입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여아에 대한 무자비한 성폭행과 범행의 상황이 상당히 잔인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양형은 상당히 가벼운 것이라는 점과 함께 검찰의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분노의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는 ‘양형’에 관한 이슈로도 번지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 참조. 최종검색일 : 2009. 10. 31.
- 2)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형실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화이트칼라 내지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주형,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쟁점에 대한 보고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자료 33, 2008, 2면 등 참조.
- 3) 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 권한분배와 관련하여 「법률적 양형과 법관의 양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행위의 속성에 따라 「협의의 양형과 광의의 양형」으로 나누기

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양형과정에서 보편타당한 기준, 즉 '양형의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양형원칙을 이끌어내고 다듬는 것을 통하여 법관에게 치밀한 행위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지침에 의하여 양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 요소들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래부터 양형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은 양형의 기준과 양형과정에 집중되었으며, 양형이론의 발전은 결국 양형근거로서 양형기준과 양형과정상에 양형사정들의 작용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귀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학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관심의 밖으로 물러나 있던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아울러 양형단계에서 양형인자로서의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즉, 피해자학의 발전은 형사사법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중의 피해' 내지 '제2차 피해'에 관심을 모으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증거의 수단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행위자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양이 확정되어야 하는 양형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합리적인 양형책임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피해자가 작용하는 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존재하는 양형에서의 피해자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⁴⁾ 특히 헌법 제27조의 공판절차진술권에서 출발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양형단계에서 범죄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도 한다. 이와 같이 양형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형법상 '양형'은 이와 같이 법관의 양형 중에서 협의의 양형, 즉 형종의 선택과 형량결정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4판), 676면;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576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11판), 749면;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제2증보), 602면; 김성돈, 형법총론(제2판), 762면 등 참조.

4) 형법상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양형조건'으로서의 피해자이다. 우리 형법 제51조 2호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형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연관성을 단순히 뭉뚱그려 '피해자에 대한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근거로서 양형기준과 양형과정상에 양형사정들의 작용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광민/강석구/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2009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참조.

II.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제도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변화

형사절차는 수사단계, 재판단계를 거쳐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으로 3단계로 나뉘게 된다. 먼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참여는 고소·고발에서 시작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공소권불행사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⁵⁾ 더 나아가 재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되어 신문을 받고,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종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단순한 절차의 객체로서 취급하여 사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절차참가가 가능한 소송상 극히 한정되고 소극적인 입장(증인 등)으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소외감과 함께 ‘형사절차’의 피해자로서 이중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제2차 피해자화(sekundäre Viktimisierung)’를 초래⁶⁾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사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비협조적 태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소외되고 형사절차상에서 주변인으로서 객체적 대접을 받던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위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형사법체계와 제도적 방식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 자리는 사후에 호혜적 차원에서 지원금 등을 지급해주는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평가와 범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그 과정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⁷⁾ 특히, 최근의 피해자학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수사절차·공판절차·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검사·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새로운 한 주체로 피해자를 등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감정에 대한 치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사실의 확정과 그 범죄의 내용에 부합한 형량을 결정해서 종국적으로 이러한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즉 양형의 전제로서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상응한 불법의 양을 정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5) 재정신청제도는 종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적 역할을 하던 것이었으나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대상범죄를 전 범죄로 넓힘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참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6)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제10권 제1호), 2002. 173면 ; 조준현,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저스티스(통권 제108호), 2008. 12. 204면 참조.

7)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2006. 4. 20면.

8)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제290권 제2호), 2008. 202면.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적 양형을 위한 위의 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부여함은 결국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참가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즉 피해자의 권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상의 개혁은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입었던 영향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양형단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참가와 의견진술은 경찰에 범죄를 통보하는 것으로부터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있어서 관련을 맺게 되나, 초점은 양형절차에서의 피해자 참가에 맞추어진다.¹⁰⁾

2.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가제도 개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미국의 양형상 피해자의견진술제도,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 영국·프랑스 등의 사인소추(action civil)제도 및 독일의 부대공소(Nebenklage)제도 등을 들 수 있다.¹¹⁾ 이하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개관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여부에 대한 참고로 삼기로 한다.

(1) 미국의 양형상 피해자의견진술제도

먼저, 피해자의견진술제도 도입의 시초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82년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2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수정헌법 제6조를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등하게 모든 형사소추에 관련하여 법관이 관여하는 모든 단계에 출석하여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을 첨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당시 많은 미국의 주에서 채택하였다.¹²⁾ 또한 1982년에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

9) M. McLeod, "Victim participation at Sentencing", Criminal Law Bulletin(22), 1986, p. 501~517; Edna Erez(椎橋隆幸 譯), 量刑手續への被害者の参加;量刑の結果そして被害者の福祉,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成文堂, 1995. 249面.

10) 이를 긍정·지지하는 견해로는 한국피해자학회/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학의 이론과 실제」, 이레문화사, 2005. 58면; 김덕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개선 방안", 저스티스(통권 제82호), 2004. 12. 53면; 윤종행,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7권 제2호), 2005. 12. 116면;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통권 제93호), 2006. 8. 165면, 주4).

11) 우리나라와 같이 피해자가 신문의 객체로서 단순한 증인이 되는 제도를 수동적 모델, 미국의 양형상 피해자의견진술제도나 일본의 정상증인제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능동적 모델, 사인소추제도나 부대공소제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제도를 공격적 모델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제도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17권 제1호, 2009, 77면).

12) 대통령 특별위원회 제안 이전에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8개 주에서만 양형단계에서 피해영향진술을 요구하였고, 3개 주에서만 양형단계에서 구두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70면 이하 참조.

VWPA)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동법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피해영향진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¹³⁾

일반적으로 현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가 관여하는 형태는 2개의 모델을 들 수 있다. 제1의 모델은 양형절차에서 피해결과를 진술하는 피해결과진술(victims impact statement: VIS)¹⁴⁾이고, 제2의 모델은 제1모델의 범위를 넘는 피해자의견진술(victims statement of opinion: VSO)이 있다. 피해결과진술(VIS)이란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결과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의견진술(VSO)이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결과 이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바람직한 양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에 대한 진술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VIS는 객관적으로 결과사실에 대한 진술이며, VSO는 결과에 대한 사실적 진술 외에 피해자의 의견이 개입된 주관적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자를 통털어 VIS로 칭하여 지기도 한다.¹⁵⁾

또한 VIS를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제출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즉, ① 피해자가 양형에 앞서서 법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VIS를 행하는 방법으로, 1994년의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개정에 의해 폭력범죄 또는 성적학대죄의 양형에 있어서 이 방식이 채용되었다.¹⁷⁾ ② 보호관찰관이 판결전조사보고서에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준 충격·영향에 관한 결과를 기재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③ 검사가 양형단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VIS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2)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

일본은 2000년 5월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2법"(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검찰심사회법과 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일본 형소법 제292조의 2)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특별지위를 인정하였다.

일본 형소법 제292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이 경우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는 의견을

13) 이에 따라 연방형사소송규칙 32조(Fed. R. Crim. P. 32)를 "판결전 조사보고서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행해진 혹은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해를 포함한 모든 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수정하였다.

14) VIS(victims impact statement)는 원어에 충실하게 '피해영향진술'로 번역되기도 한다.

15)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11면, 36면 참조 ;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89면.

16)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167-168면 참조.

17) Fed. R. Crim. P. 32(C)(3)(E).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일본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진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이와 같은 피해자 등의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 의견을 공판정에서 혹은 서면으로 한 진술이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동조 제9항)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의 취지는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도, 오히려 공판에서 피해자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서술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⁹⁾

한편, 일본은 2000년 '피해자의견진술제도'(형소법 제292조의 2)를 도입한 이후 2004년에 성립된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내용을 실천하는 형태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관여에 대해서도 법정비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에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특정범죄의 피해자²⁰⁾는 '피해자참가인'이라는 형태로 일정한 범위에서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²¹⁾ 또한 2008년 4월의 법개정²²⁾에 의하여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 변호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일본의 제도를 '피해자참가인제도'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이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종전의 형사소송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검찰관에 대한 의견진술과 검찰관의 설명의무 규정(제316조의35)에 의해서 검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해결되는 '협의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8)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피해자진술권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이를 정상증인제도라고도 부른다.

19) 酒卷匡, "犯罪被害者による意見の陳述について", 「法曹」(52卷11号), 2000, 17面. 만약 이와 같이 이 제도를 해석한다면 양형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의견진술의 형식이 아닌, 증인의 증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피해자의 의견진술에서 검사는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해야 한다고도 해석한다(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102면).

20) 소송참가권이 인정되는 특정범죄의 피해자(소송참가권자)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 열거된 해당범죄의 피해자에 한정된다.

21)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소송참가권자는 법원에 의한 피해자참가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다음의 행위가 인정된다(제316조의33이하). 즉, 공판에의 출석(제316조의34), 검찰관에 대한 의견진술과 검찰관의 설명의무 규정(제316조의35), 증인신문(제316조의36), 피고인 질문(제316조의37),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제316조의38), 피해자 참가인의 보호규정(제316조의39)이다. 이 중에서 증인신문, 피고인 질문,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이 필요하고, 또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한다는 제약이 붙여져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吉村眞性, "刑事手續における被害者参加論", 被害者學研究 第19号, 日本被害者學會, 2009. 3, 17面 이하 참조.

22) 2008년 4월에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및 총합법률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20년 법률제19호)이 성립됨에 따라 충분한 자력이 없는 피해자참가인은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률 제5조 이하.

(3)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

사인소추제도는 특히 프랑스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이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공소(action publique)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한 사소(action civil)를 광범위하게 결합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프랑스 형사소송법, CPP 제2조), 사소의 제기는 곧 공소가 제기된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공소에서 피해자는 사인당사자로서 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²³⁾

독일의 경우에도 사인소추제도(Privatklage)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피해자의 소송참가'로서 형사소송법 제5편 제395조 내지 제402조의 규정을 통해서 부대공소제도(Nebenklage)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대공소제이란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이다. 특정범죄²⁴⁾의 경우, 피해자나 그 변호인은 공판참가를 신청하여 검사와 같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가능하고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검사의견진술과 별개로 논고 및 구형 등이 가능한 제도이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내지 제402조).²⁵⁾

생각건대 현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어 있는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도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²⁶⁾ 그러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검사가 공동으로 당사자적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소송참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피해자의 사인소추나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진술권)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

23)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제11권), 1992. 9, 90면. 특히 프랑스의 사소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해서도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24)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에서 부대공소에 참가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불가침성·개인적 자유·생명에 관련된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25)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한생일, “부대공소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강화”,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20호), 2009. 6, 149-167면 참조.

26)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는 피해자에게 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는 강화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복수감정과 보상심리의 개입으로 형사소송을 통한 공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조화되기 어렵고, 피해자는 검사와 같은 객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사익의 추구만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제적 진실발견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통권 제82호), 2004. 12, 25~25면;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91면 등.

는 제도인 미국의 양형상 피해자진술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의 해석론

1. ‘피해자진술권’의 성격

형사소송법은 제6차 개정시(1987. 11. 28)에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신설(제294조의2)하였는데,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은 신청주체의 확대, 배제사유의 축소, 진술내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진술권을 강화하였다.²⁷⁾ 여기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성격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 피해자진술권 규정의 취지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²⁸⁾ 또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사인소추를 완전히 제한하여 검사에게만 형사소추권을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 형사절차 참여를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의 의견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⁹⁾

27)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종전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제1항),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되(제2항), 피해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2호). 그러나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종전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청주체의 확대, 배제사유의 축소, 진술내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개정법은 피해자법정진술권의 신청자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제294조의2 제1항). 그리고 피해자 진술권의 배제사유에서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종전의 법보다 피해자 진술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제294조의2 제3항)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법정진술권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법원 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6. 154면.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4. 17, 88헌마3 결정.

29)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2헌마453; 김성환,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2006. 12. 484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진술에는 보통 범죄가 피해자에게 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범죄발생의 상황과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인격적 특성 및 사회적 평가,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피해결과를 진술하는 '피해결과진술'(VIS)과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결과 이외에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의견진술'(VSO)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진술 또는 피해자 의견진술 등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으로의 신문과 동조 제2항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2분하여 규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제2항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의 진술로 객관적인 피해사실 혹은 피해의 결과를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양자를 통틀어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칭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피해자가 단순한 증언의 객체로 증인신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재판절차진술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기본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시 피해자의 '진술권'이 되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증인신문절차와는 그 성질을 명백히 달리하는 것이다.³⁰⁾

2. 피해자진술권의 내용 - 양형관련 피해자진술의 포함여부

피해자진술권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관련진술을 포함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견진술이 발달한 미국의 양형상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보면 우리의 피해자진술권에서 양형관련 진술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1) 찬성론

피해자진술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란 피해의 심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가 갖게 된 감정과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피해의 결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견'이란 피고사건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피해자의 견해로서 사건의 평가, 피해자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영향, 손해배상의 필요성, 양형에 대한 의견, 피고인에 대하여 바라는 점, 충고 등³¹⁾이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³²⁾ 보다 구체적으

30)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76면.

31) Edna Erez, Victim Voice Statements and Sentencing : Integrating Restorative Justice and Therapeutic

로 살펴보면, 양형심리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를 배제시킨 채 판사 혹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의견과 검사의 논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검사와 피해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이 공익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있다.³³⁾ 그러므로 양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양형결과의 개선 혹은 효과적이고 정확한 양형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자가 양형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듣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범죄의 영향에 대한 청문과는 매우 다른 역동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2) 반대론

부정적 의견은 사회가 배심·양형권자에게 생사의 결정권을 부여한 이상, 사회는 배심·양형권자가 사려 깊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결과의 진술(VIS), 피해자의견진술(VSO)은 인간의 가치를 친구나 친족의 수와 그들의 응변에 기초하여 비교하도록 배심·양형권자를 몰아넣는다. 어떤 범죄자는 우연히 선택한 피해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자는 살해한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사태는 적정절차에 합치되지 않는다³⁵⁾고 한다. 또한 양형판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포함된 정보인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특정 피해자에게 야기된 특수한 피해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양형결과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행하여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격차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³⁶⁾고 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피해자는 보복감정에 휩싸여 매우 징벌적으로 되고, 감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이익에 적합한 양형보다는 중한 양형을 제안할 것이라는 점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양형관련 피해자진술의 찬반론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다. 문제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어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오늘날

Jurisprudence Principles in Adversarial Proceedings, 40 No. 5 Crim. Law Bulletin3, 2004. p.2.

32)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211면.

33)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53면.

34)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56면.

35) Susan Bandes, "Empathy, Narrative and Victim Impact Statements", 63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61, 410(1996);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172면 주23).

36)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15면.

급변하는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면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정당화근거, 즉 양형결과의 개선, 가해자의 사회재통합추진,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의 촉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회복과 효율성 제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론에서 제기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제한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신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판절차가 이분화 되어 있지 않은 재판절차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사실인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균형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³⁸⁾

이와 같이 양형관련 피해자진술의 찬성론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중간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전문에서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피해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진술 중에서도 피해의 결과의 진술(VIS)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포함한 피해자의견진술(VSO)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결과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견진술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견진술권의 중요성은 양형위원회의 제1차 양형기준상에 공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이 양형감정인자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37) 양형절차상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바람직함가에 대한 찬반론의 대립에 있어서 세 차례에 걸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1987년 Booth v. Maryland 판결 [Booth v. Maryland, 482 U.S. 496 (1987)]과 1989년 Carolina v. Gathers 판결[Carolina v. Gathers, 490 U. S. 805 (1989)]에서는 사형재판에서 VIS의 사용이 연방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1991년 Panyne v. Tennessee[Panyne v. Tennessee, 111 S. Ct. 2597 (1991)]판결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는 VIS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선례인 Booth 및 Gathers 판결을 명시적으로 뒤집었다. Panyne 판결이후 더 많은 법원에서 사형양형과 이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에서 VIS의 도입이 허용되었다. 각 판결의 개요 및 평가에 관해서는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166-173면;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79-84면 참조.

38)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배심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적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의 범죄가해자에 대한 중한 양형의 요구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양형에 관한 의견 또한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양형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아직 재판 2원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9) 물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것으로 보며, 단순히 공판정에서의 의사표현에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3. 피해자진술권의 문제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장 적극적인 지위로 소송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이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원고)로서 형사법원에 소제기를 하거나 검사와 함께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의 행사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송구조상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서 피해자의 소송절차참여를 인정하는 제도가 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이다. 즉, 당사자 논쟁주의의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진술제도를 도입하는 근거의 하나가 피해자의 관심을 형사절차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⁴⁰⁾ 현재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으로서 피해자진술권은 그 보장의 정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조를 혼합하고 있는 특수한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피해자진술권’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것이다.⁴¹⁾ 이러한 피해자진술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독립적인 기본권으로서 단순히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형사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진술의 내용에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진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진술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개정을 하면서도, 구법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구법 제294조의2 제1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⁴²⁾ 다만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규정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개정 제294조의2 제2항), 증인신문사항은 당연히 범죄사실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규정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관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⁴³⁾

40)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5면. 피해자의견진술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학의 발전과정에 있어 피해자권리보호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소리(voice)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다.

41)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6면.

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2005. 6. 20.)에서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방식에 관하여 증인신문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자유로운 진술기회 부여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①피해자가 위증부담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도 없이 강력한 유죄심증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②사법참여재판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증인신문방식을 유지하면서 신문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제출안이 성안되었다(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216면)고 한다.

43) 조준현,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220면. 이에 반하여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수사절차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진술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없으며, 진술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⁴⁴⁾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동법 제163조의2),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제294의3)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 이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소송참가가능성을 넘는 직접적 방법 등의 부재는 아직도 피해자를 소송의 적극적인 지위를 가진 참가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IV.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참여 개선방안

1.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개선방안

(1) 증인신문절차로부터 피해자진술의 분리

피해자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소송절차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의 증인신문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미 신문받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며, 수사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재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진술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진술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범죄의 성립(사실인정)과 양형을 분리한다면 범죄피해자의 진술은 양형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의 결정이 단순히 추상적인 범죄경중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손해와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피해자진술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화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들에 관한

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제한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구법 동조 제1항 2호)은 삭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수사절차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종래 피해자의 진술을 증인신문으로 파악하던 것에서 증인신문이 아닌 권리입을 자각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44) 천진호, "범죄피해자 권리확보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15면.

의견 등에 대한 진술이 사실관계와 양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의견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은 분노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고 하는 피해자진술권의 성격과 범위를 조문상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피해자진술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양형절차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진술이라는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진술의 내용은 동법 제29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혹은 처벌불원과 양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본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권은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증인신문과는 성질상 구분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증인신문을 거친 경우에도 다시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진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해자진술의 시기와 방식의 명확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그 의견진술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재판절차에 미치게 될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술의 내용은 사실인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려한다면 진술의 시기는 증거조사절차가 종료하고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견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범죄사실의 존부 및 이미 조사한 사실관계와는 다른 사실, 혹은 그러한 것에 근거한 의견진술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의견진술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을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상⁴⁵⁾ 피고인의 변론과 재판상의 심리절차의 경과를 지켜본 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절차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 규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구두진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두진술은 피해자와 판사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상호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⁴⁶⁾ 그러나 피해자가 극히 심한 피해로 인하여

45) 개정 형사소송법이 동법 제294조의2 제1항 2호에서 진술권제한사유로 구법상의 수사절차상에서 진술한 경우 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취지상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재판절차상 피해자 진술의 시기는 법원의 재량으로 해석된다.

4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중범죄에 한하여 배심제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배심재판에서 구두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의 감정화의 문체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배심재판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배심재판에서는 구두진술을 금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지 :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137면).

예컨대 가해자로부터 심한 상해 등을 입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및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은 공판에서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혹은 그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진술권행사를 보장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양형절차에의 실질적 참여권 인정방안

한편 범죄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실질적 참여권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소극적인 방안을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인 지위, 즉 소송 당사자적 지위로의 참여가 요청된다. 대표적으로는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도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며,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 또한 방대하므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사법불신의 해소와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검사가 공동으로 당사자적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제도의 도입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모순되어 어렵다면,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피해자참가인제도와 같이 소송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지위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비록 형사소송의 당사자적 지위는 아니지만 공소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을 방법, 또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의 보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⁴⁷⁾

3.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163조의2에서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신문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뢰관계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이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⁴⁸⁾ 우리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

47)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피해자참가인제도는 국가와 범죄인 간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지위를 강화한 매우 특이한 제도이다. 즉, 피해자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참가인이라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당사자적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다(본고, II. 2. (2) 참조). 현재 검토 중인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미래기획단 연구자료집, 형사소송법 개정 T/F 자료집, 2009, 478-480면 참조).

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그러나 헌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조력권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그리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신문 외에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피해자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⁴⁹⁾

V. 맺음말

국가와 범죄인 간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변화의 중심에 피해자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관심의 밖으로 물러나 있던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아울러 양형단계에서 양형인자로서의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위와 같은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은 형사사법의 사각지대로 물러난 피해자를 다시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리고자하는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다지 많은 영향을 가져오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형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직접적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회복적사법이론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가능성 내지 참가정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도 제294조의2에서 피해자진술권을 대폭 강화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27조에 근거한 독자적인 피해자의 기본권인 피해자진술권의 성격을 간과하여 구법의 증인신문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

48) 개정 형소법상 피해자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범위 속에 변호인을 넣어 해석함으로써 형사절차상 피해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석으로 해석하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이의제기 등)는 아직도 근거 규정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제10호), 1998, 219면.

49) 독일은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406조f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일본은 2008년 피해자참가인제도를 도입하면서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었다.

로 보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인신문절차로부터 피해자진술의 분리, 피해자진술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화, 피해자진술의 시기와 방식의 명확화 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와 범죄인 간의 대립구도에 바탕을 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범죄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방식, 예컨대 사인소추제도 내지 부대공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의 도입가능성도 타진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폭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조치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의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의 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김 현 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김 현 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I. 들어가며

1.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전통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변적 존재로 머물러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로,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는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지위 확립을 위한 피해자 관련 입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충실화시켜왔다.¹⁾

우리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학계와 실무계 모두 범죄피해자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1987년 개정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입법적으로 표출하였다.²⁾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지원의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³⁾이 제정되고, 그 후 2004년 9월에 법무부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1)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연구」 10-1, 한국피해자학회, 2002, 139면
2) 안희준,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17-2, 한국피해자학회, 2009, 59면
3) 당해 법률의 성립과정과 내용에 관하여는 이진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91면 이하 참조

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진술권이 강화되는 등 꾸준히 피해자의 권리보호강화가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10년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피해자보호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해로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면개정안 등이 그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핵심내용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들이 통과된다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피해자보호에 관하여는 비약적 도약의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심리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보호 제도는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피해자보호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다.

①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의 구조금제도

잘 아는 것처럼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⁴⁾ 그런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그 까다로운 지급요건과 현실화되지 못한 구조금액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전체 강력범죄피해자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데 비해 구조금 수령자는 155명에 불과하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② 피해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구조금액

구조금액 역시 2009년 4월에야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되긴 하였으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구조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4) 박광민,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 「범죄피해자와 인권」 2008년도 법무부 용역연구, 23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금이 최대 1억 원인 점에 비하여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범죄피해구조금제도는 구조금액이 범죄피해자들의 자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액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증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③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운 예산시스템의 한계

그런데,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데도,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예산은 일반회계예산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동안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보호지원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따라서 예산제도보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축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④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지원의 부재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시설 및 의료지원이 되고 있으나, 일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⑤ 범죄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부재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거나, 회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주거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및 쉼터가 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설립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⑥ 유사 피해자지원시스템 간의 유기적 협력 미흡

현재 성범죄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아동성폭력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그 외의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일응 담당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자체 피해자서포터가 지정되어 있고, 검찰에도 피해자지원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어느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호소를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

톱 서비스체제가 미흡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보호지원의 필요성의 인식하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무부에서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범죄피해구조금 요건 완화 및 구조금 증액

1.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

작년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조두순 사건을 전후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은 구조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어느 시점보다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회에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이 5개나 제출되어 있다.

〈참고 : 국회 계류 중인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심재철 의원안 (한나라당)	김동철 의원안 (민주당)	김성수 의원안 (한나라당)	박선영 의원안 (자유선진당)	박민식 의원안 (한나라당)
발의 일자	2008. 7. 23.	2009. 2. 17.	2009. 9. 10.	2009. 9. 25.	2009. 12. 14.
지급 대상	① '상해' 추가 ② 과실범 추가	'중장해'를 '장해'로 확대		① '중장해'를 '장해'로 확대 ② 중과실 범죄 추가	'중장해'를 '장해' '로 확대
지급 요건	'가해자 불명·무 자력' 요건 삭제				'가해자 불명·무 자력' 요건 삭제
구조 금액		통계청의 가계소 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월생계비 를 기초로 산정		구조금액을 피해 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지급 제외 사유	지급제외 요건 법률 규정	지급제외 요건 법률 규정			
기타	작업상여금 등 에 대한 구상권 규정 삭제		정신적 피해지원 에 대한 근거규 정 신설	구조금 지급신청 의 기각결정 등 에 대한 불복절 차신설	

2.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가.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삭제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금 지급요건으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을 요구하고 있으며⁵⁾, 장해구조금의 경우 장해 1~6급의 중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등 구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전체 강력범죄피해자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데 비해 구조금 수령자는 155명에 불과하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핵심정책 중 하나인 범죄피해구조금 지원현황이 이처럼 미비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 정책의 하나로 보는 오해, 부족한 관련예산으로 인하여 그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금액도 현실에 맞지 않게 소액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논리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

- ① 첫째, 범죄의 발생은 국가가 범죄예방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고, 피해자의 경우 아무런 귀책도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구조를 방치하는 것이다.
- ② 둘째, 곤궁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가해자 불명과 무자력 요건까지 입증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외상 또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데, 국가에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지원은 해주지 못하면서 가해자에 관한 부분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 ③ 셋째, 일본이나 미국 등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넷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하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탐문하는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점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이유에서 구조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함에도 국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

5) 현행법령에서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 12.29. 법률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구조적격요건으로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에 더불어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이란 사유에서 완화된 수준이다.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로 현행대로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정도로 구조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⁶⁾ 이러한 견해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와의 대면자체를 꺼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 더 철저하게 실현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이 삭제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례로 이른바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⁷⁾.

이처럼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삭제로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소극적·예비적 지위에 있던 국가를 적극적·우선적 지위로 변모시키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구조금 예산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관련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는 재력이 있는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의 삭제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다면 안정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이 2건이나 계류 중에 있다. 2008. 7. 23. 발의된 심재철 의원안⁹⁾과 2009. 12. 14. 발의된 박민식 의원안¹⁰⁾이다.

법무부는 2010년 위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들의 심의과정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표명을 통해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이 삭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의 '중장해'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¹¹⁾ 이에 따라 제7급 이하 장해가 남은 경우와 상해가 중하더라도

6) 대한변협에서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안 중 요건완화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다., 2009.12.23.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5면

7) 국가에서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서 생활비 지원형식으로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 있다.

8)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 제2항

9)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계류의안 중 '범죄피해자구조법안(심재철의원 등 22인)' 참조

10)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계류의안 중 '범죄피해자구조법안(박민식의원 등 11인)' 참조

11) 범죄피해자구조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구조금을 전혀 받지 못 하는 7~14급 장해의 경우도 가장 경미한 제14급 장해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등으로 상당한 장해로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모두 보호대상이 됨에도¹²⁾ 유독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제시 없이 제6급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장해등급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영구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등급이 장해로 판정받는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범죄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일정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범죄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하였더라도 그것이 영구장해로 남지 않으면 국가에서 아무런 구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별첨 : 범죄피해자 장해등급표 참조)

상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배제 및 장해등급이 협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해구조금 대상 범위를 ‘제1급 내지 제14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제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하여 ‘중장해’를 ‘장해’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¹³⁾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중장해’피해자에서 ‘장해’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3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다. 2009. 2. 17. 발의된 심재철 의원안, 2009. 9. 25. 발의된 박선영 의원안¹⁴⁾과 2009. 12. 14. 발의된 박민식 의원안도 동일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3. 구조금 증액

① 구조금 상한 증액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구조금액이 범죄피해자들의 자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액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구조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여 이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우리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2)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80조

13) 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해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14)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계류의안 중 ‘범죄피해자구조법안(박선영의원 등 15인)’ 참조

〈참고 : 한·일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비교〉

		한 국	일 본 ¹⁵⁾
지 급 요 건	피해자요건	· 한국인 · 한국과 상호보증인 있는 외국 국민	· 일본인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해결과	· 사망 · 장애 1~6급의 중장애	· 사망 · 장애 1~14급의 장애 · 중상병
	가해자요건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특별한 요건 부존재
지 급 금 액	유족구조금	3,000~1,500만원	2,965~320만엔 (약 4억4,000~4,750만원)
	장애구조금	3,000~300만원	3,974~18만엔 (약 5억9,000~267만원)
	중상해급부금	없 음	최대 120만엔 (한화 약 1780만원)

최저액인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제6급¹⁶⁾에 해당하는 중 장애를 당하여야 하는데 제6급 장애만 보아도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는 경우’ 등 일 정도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장애를 당하여야 한다.

이처럼 현재 범죄피해구조금이 실제 손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금액의 상향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 구조금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있지만 이는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피해자가 영구적인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금액으로 만약 가장이나 경제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나머지 가족이 평생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법무부 인권국 415면 이하

16)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70%에 이른다.

유족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유족구조금				
	접 수		지 급		
	건수	신청액	건수	지급액	평균단가
2004년	118	1,173,000	65	611,000	9,400
2005년	189	1,870,333	102	978,133	9,590
2006년	172	1,720,000	103	1,001,000	9,718
2007년	232	2,320,000	157	1,549,000	9,866
2008년	212	2,090,000	141	1,345,000	9,539
2009년	270	3,415,667	196	2,158,333	11,012
증가율	27.4%	63.4%	39.0%	60.5%	15.4%

그리고 실제 3,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 2009년도에도 유족구조금의 지급평균 단가는 1,100만원 수준이었고, 이는 한도가 확대되기 이전인 2008년의 유족구조금 평균지급단가 953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법무부는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경제적 손실의 반영여부

또한 구조금액 증액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 및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조금 지급을 세분화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의 경제적 수입의 손실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수입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수입의 손실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현재 박민식의원이 제출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수입의 손실을 고려하는 이러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있다. 즉 “유족구조금은 사망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¹⁸⁾고 규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17)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평균지급단가만 볼 때 15.4%증가되었다. 상한 확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0년에는 물론 평균지급단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2009 의안번호 6992호 범죄피해자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제9조

4. 과실범의 포함여부

현재 피해자구조금의 지급범위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의 범죄피해의 정의규정에서 고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과실범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범죄로 인정되어 기소되는 과실범죄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사고 또는 산업재해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과실범죄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조금을 지급할 실익은 적어 보인다¹⁹⁾.

과실범의 경우 구조금지급이 필요한 경우란 업무상 실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런데 사실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대부분 과실범의 경우는 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²¹⁾.

5.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논의 진행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관련 국회의 개정안 진행경과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²⁾

-
- 19) 기획재정부는 재정확대를 이유로 과실범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12.2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3면
- 20) 참고로 과실범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는 비판을 감안하여 박선영의원의 개정안에는 과실의 범위를 중과실로 제한하여 확대하지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 21) 2009.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3면 :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핀란드만이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다.
- 22) 2009.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심사자료 1면 참조

① 법안 심사경과

구분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 및 소위원회	소위심사	비고
심재철의원안	08.7.23(8.29)	08.11.20	08.11.21,09.4.15	계속심사
김동철의원안	09.2.17(2.18)	09.4.13	09.4.15	계속심사
김성수의원안	09.9.10(9.11)	09.11.18		소위미상정
박선영의원안	09.9.25(9.28)	09.11.18		소위미상정
박민식의원안	09.12.15(12.16)	09.12.22	소위 바로 회부	국회법 제58조④
정부안	08.11.28(12.1)	09.2.24	09.2.25,2.26, 4.15	계속심사

② 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심재철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범죄를 과실범으로 확대 · 구조적격 요건인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삭제 ·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가해 수형자 작업상여금에 대한 국가 구상권 규정 삭제
김동철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대상을 일반 장애까지 확대 ·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지급기준에서 '가계소비지출액' 고려
김성수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구조금과 장애구조금을 법률에 명시 ·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회복 프로그램 의무화
박선영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범위를 '장애' 및 '중과실'까지 확대 · 재심신청 근거 신설
박민식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대상을 일반 장애까지 확대 · 구조적격 요건인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삭제 · 유족구조금과 장애구조금을 법률에 명시(국가배상법 기준)
정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자를 2순위로 함 · 지급기준에서 '피해자 또는 생계유지상황' 삭제

③ 법안별 비교표²³⁾

구 분		현 행	심재철의원 안	김동철의원 안	김성수의원 안	박선영의원 안	박민식의원 안
구조금 지급 대상 (안 제2조)	피해 범죄	고의범 (과실범죄 제외)	고의 또는 과실범			고의 또는 중과실범	
	구조 대상	사망 또는 중장해	상해까지 확대 →사망·중장 해 또는 상해	장해로 확대 →사망 또는 장해		장해로 확대 →사망 또는 장해	장해로 확대 →사망 또는 장해
구조금지급 요건 (안 제3조)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삭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삭제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 (안 제6조)		대강만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법률에서 상세 히 직접 규정	법률에서 상 세히 직접 규정			
			〈양 법안은 입법방식에서 차이 있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안 제8조 제3항)		가해 수행자의 작업상여금 등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 행사 가능	〈삭 제〉				
구 조 금 지 급 기 준 (안 제9조)		대통령령에 위임		통 계 청 장 이 고 시 한 ‘전 국 가 구 가 계 소 비 지 출 액’ 고 려	유 족 구 조 금 과 장 해 구 조 금 을 직 접 법 률 에 명 시		유 족 구 조 금 과 장 해 구 조 금 을 직 접 법 률 에 명 시
기 타 사 항			· 구조금 종류 에 ‘상해구조 금’ 추가		범죄피해자 등의 정신 회복 프로그 램 운영 의 무(안 제19 조 신설)	· 재심신청 근거 신설 (안 제13 조의2) · 재심담당하 는 본부심 의회와 지 구심의회로 이원화	

23) 2009.12.2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작성,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심사자료 제 2면

Ⅲ.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

1. 추진배경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발생의 경우 이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등 대규모 피해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예산의 경우 신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데도 현재 일반회계예산방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규모도 2008년 기준 30여억 원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전락한 이후에나 작동할 수 있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보호정책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가 시급한 시점이다.²⁴⁾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 발의 및 주요내용

2009. 10. 21.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당해 법안은 납부된 벌금의 5% 이상을 납입하도록 하여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한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 기금법 입법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08.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신설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안,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결렬
 - ※ 기획재정부는 기금축소 정부정책, 별도 기금설치의 필요성 미흡 등 기금설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 2008. 12. '범죄피해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에 관한 용역 연구보고서 발간
- 2009. 4. 국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
- 2009. 9. 7. 박민식 의원 주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 개최
- 2009. 10.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²⁵⁾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한 벌금 집행액,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제1항).
- 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한 벌금에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영함(안 제5조).
-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둔(안 제7조).
-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가.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아래와 같이 벌금 수납액의 최소 5%,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정부 외의 기부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²⁶⁾으로 구성되나, 그 중 가장 주된 재원은 벌금 수납액으로부터의 납입금이 된다²⁷⁾.

25)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계류의안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민식 의원 등 103인)’ 참조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4조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4조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 수납액의 5%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예상 벌금 수납액을 기초로 한 기금 납입금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표1 : 향후 5년간 벌금 수납액 및 기금 납입금 추정치〉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벌금 수납액 추정치 ¹⁾	15,348.3	15,593.9	15,843.4	16,096.9	16,354.4	15,847.38
기금 납입금 추정치 ²⁾	767.4	779.7	792.2	804.8	817.7	792.36

1) 해당 연도 벌금수납액 = 전년도 벌금 수납액 추정치*1.016(벌금수납액 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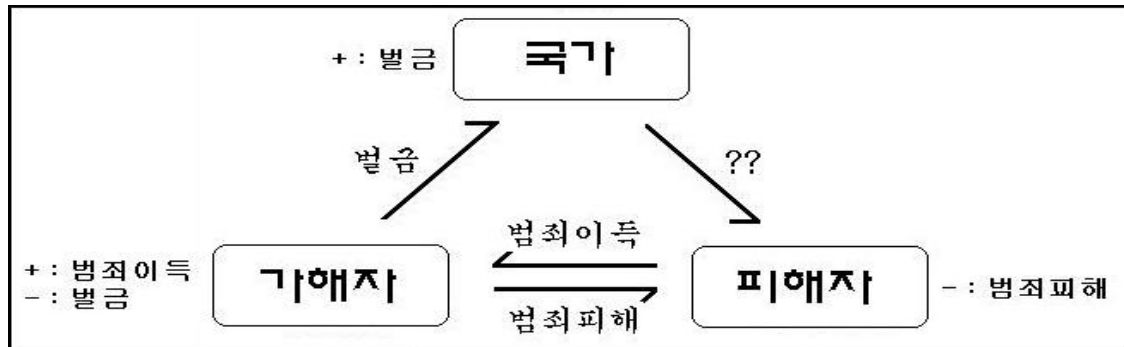
2) 기금 납입금 추정치 = 해당 연도 벌금수납액 추정치*0.0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안비용추계서)

나. 주된 재원인 벌금과 기금의 목적사업 간의 긴밀한 연계성

무고한 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은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자(가해자)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하지만, 국가는 벌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므로 벌금을 범죄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²⁸⁾

〈그림1 : 벌금 부과 시 수익구조〉



한편, 이에 대하여 벌금은 경제사범, 재산범죄 및 다소 경한 범죄에 부과되는 반면,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이 되는 살인·중장해 등 중범죄는 신체적 형벌 부과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²⁹⁾ 그런데, 범죄피해자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모든 범죄로 ‘살인·중장해 등 중범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혼동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8) 이상원, 전계논문, 110면; 최영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29) 기획재정부 작성, 범죄피해자기금법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참조

기금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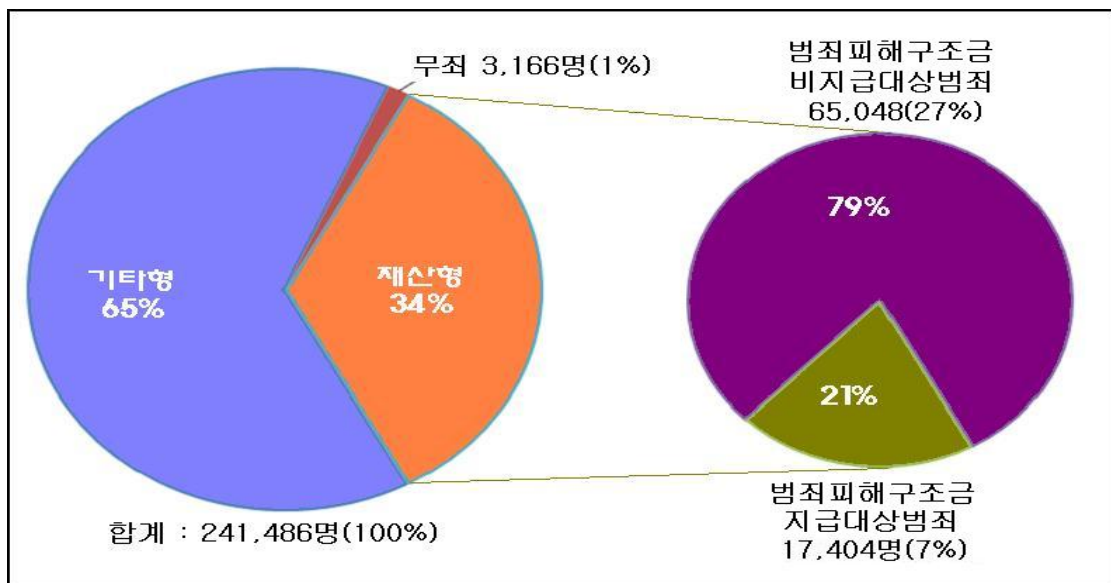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실령, 범죄피해구조금제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전체 벌금형 사건 중 약 21%가 상해·폭행과 같이 범죄피해구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이고, 기금법안에서는 벌금 전체가 아닌 일정비율(최소 5%)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만 비교하더라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부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³⁰⁾

〈그림2 : 전체 범죄중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범죄의 비율〉



30) 이상원, 전계논문, 113면

게다가 최근 통과된 문화재보호기금법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주요 재원³¹⁾으로 이것과 비교할 때 벌금과 피해자 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은 매우 높은 편이고, 미국의 경우도 벌금 수납액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³²⁾ 실제 대부분의 재원은 기업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³⁴⁾의 경우에는 아예 벌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형법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나아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은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한정되지도 않으므로 벌금 중 일정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범죄피해의 회복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원과 목적사업 간에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 하겠다.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와 필요성

가.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1) 범죄피해구조금제도 현황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조금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구조금액이 많지 않아 구조금을 받는 피해자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2 : 범죄피해자 발생현황〉

구 분	전체범죄 피 해 자	5대 강력범죄별 피해자 발생 (단위 : 건)					계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	상해 등 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약취·유인 범죄	방화·실화 범죄	
2006년	1,050,066	5,485	206,978	13,108	112	3,314	228,997
2007년	1,122,607	5,455	232,829	13,482	156	3,259	255,181
2008년	1,218,164	5,807	240,018	14,919	257	3,391	264,392

31)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32)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법무부 인권국, 384면

33) 미 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victims of Crime(Ovc)의 1997년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기금의 대부분은 기업에 부과된 대규모 벌금으로 충당되고 1996 회계연도에 약 529,000,000 달러의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440,000,000 달러가 기업 및 화이트칼라 범죄와 연관된 6개의 형사 사건으로부터 충당되었다고 함

34)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2007년 법무부 용역연구, 95면

〈표3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접 수		지 급	
		건수	신청액	건수	지급액
2004년	749,000	138건	1,274,000	74건	648,400
2005년	536,652	221건	2,052,333	118건	1,065,133
2006년	1,936,652	200건	1,861,000	117건	1,063,000
2007년	2,109,388	261건	2,469,000	169건	1,607,000
2008년	1,878,388	237건	2,225,000	155건	1,411,000
2009년	2,246,220	295건	3,611,667	205건	2,204,833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율		24.5%	62.3%	32.3%	56.3%

※ 2009년 예산집행액 : 2,228,833천원(24,000천원은 전년도 결정분)

(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제1급부터 제6급’에서 ‘제1급부터 제14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예산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행 일반회계편성방식으로는 이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구조제도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가 그 사실상의 필요요건인 상황이다.

구조금액 역시 2009년 종전의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18년 만에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어 범죄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는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표4 : 구조금액의 변화〉

	88.7.7.~ 91.12.31.	92.1.1.~ 09.4.19.	09. 4. 20.~
유족 구조금	500만원	1,000만원	- 생계를 함께 하는 유족의 수, 생계유지 방법, 피해자와 유족 간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장해 구조금	1급 -300만원 2급 -200만원 3급 -150만원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1급 - 3,000만원 2급 - 2,500만원 3급 - 2,000만원 x 1(일정요건의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4급 - 1,500만원 또는 1/2(그외 대상자) 5급 - 1,000만원 6급 - 600만원

(3) 기금 설립의 당위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범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 범죄행위로서, 주로 살인,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그 대상이다. 그런데, 강력범죄 발생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은 연도별 편차가 커 특히 2005년의 경우 지급금액이 예산액의 2배 가까이 되었다.

〈표5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액과 지급액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액	556	493	542	542	542	542	750	536	1,937	1,878	1,878
보상인원	85	102	81	67	50	57	74	118	126	169	151
지급금액	772	920	736	620	472	517	641	1,065	1,120	1,607	1,408
오차(%)	-39	-86	-36	-14	13	5	16	-99	42	14	25

2009년 4월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상한은 유족구조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이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금액의 급증이 예상되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0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고, 단계적으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연간 지급인원이 200명 남짓에 불과한 것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결과로, 향후 보상인원과 지급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확한 인원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범죄피해구조금제도는 신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년 9월 김천·구미지역센터, 2003년 11월 대전지역센터를 시점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에 상담, 치유, 법률조력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인력, 조직 및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이 실효성 거두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2010년 1월 현재까지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영국의 V.S., 미국의

NOVA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 9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독립·비영리 사단법인)³⁵⁾가 출범하여 활동 중에 있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성격, 설립근거 및 업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발적인 지역 민간 자원봉사자 단체이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 검찰청과 연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센터의 본래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는 민법 제32조 내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피해자지원센터 업무내용〉³⁶⁾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응급진료 및 치료
- ▶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의 운영
-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실정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연합회를 포함하여 58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직원(이사장 및 상근직원 2-3명), 수천 명의 회원(상담관련 전문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지원을 실질화·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5) 김지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65면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의 87.6%가 전국연합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표6 : 센터운영 실적〉

구분	상 담 (전화·면접)	경제·의료 지원	신변 보호	형사조정	기타	총계
2006년	14,242	1,140	630	2,553	9,155	27,720
2007년	12,705	2,747	510	7,912	16,241	40,115
2008년	19,260	3,400	277	11,496	18,415	52,848
2009년 (1-8)	15,481	2,274	201	10,908	1,771	30,635

2008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원은 약 90억 원으로 법무부(17.5%, 약 16억 원), 지방자치단체(44.7%, 약 40억 원)와 자체 기부금(37.8%, 약 34억 원)으로 조성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센터의 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기부금이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므로 이들 지원금이 의미 있게 증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센터임원의 기부금 역시 금액 자체에 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나치게 지운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센터의 활동 자체에 대한 참여를 떨어뜨릴 위험³⁷⁾이 있어 장기적인 재원마련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가(법무부)의 보조금 향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³⁸⁾

그런데, 국가의 직접지원방식은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처럼 획일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할 경우 범죄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개개의 상황에 최적화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그 전제로 충분한 보조금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피해 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정 센터에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와 제2차, 제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상생활 복귀까지는 장기간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소요자금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³⁹⁾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기금의 설치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⁴⁰⁾ 즉,

37) 김지선, 전계논문, 181면

38) 이상원, 전계논문, 39면

39) 진정구(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민식의원 등) 검토보고서, 12면

국가에 책임이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은 재정에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료상담, 위로금, 장학사업 등 피해자의 복지와 관련된 부담까지도 모두 재정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규정은 모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포함하며, 민간기구의 자생적 설립 및 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V.S.(Victim Support) 재정 거의 대부분을 국가 보조금으로 충원⁴¹⁾하고 있으며 독일의 Weisser Ring 역시 벌금을 바로 재원으로 하는 할당벌금⁴²⁾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 중심의 피해자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재의 피해자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급박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2010년 피해자보호기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전인 2~5월에 전국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기금사업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할만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금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보호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다른 법령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

기금 법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 모든 피해자관련 지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지원할 지 여부는 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는 기금심의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 기금방식의 적합성

현재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규모는 구조금 약 22억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약 15억 원 등 합계 약

40) 기획재정부 측 주장

41) VS의 2004회계연도 총 예산은 31,809,000파운드인데, 그 중 정부 보조금이 전체의 98.1%인 31,199,000파운드(약 600억원)를 차지

42) Weisser Ring도 2008년도 예산 13,994,905유로(240억원 상당) 중 할당벌금이 1,846,444유로(32억원 상당)로 약 13.1%를 차지

37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은 통상 재원지출 시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수준을 볼 때 대폭적인 사업 강화가 절실한데, 현행 일반회계예산 방식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요청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⁴³⁾ 위와 같은 이유에서 예산상의 제약과 함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일반회계예산 방식은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성질과 맞지 않는다.⁴⁴⁾

이에 대하여 일반회계예산 확대로 범죄피해자 지원 가능하다는 지적⁴⁵⁾이 있다. 즉, 기금의 주된 용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는 최대지급액도 300%까지 확대하여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내용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중심의 지원이 된 것이고 앞으로는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이 1회성 금전지원인 반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서 이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도 구조금 못지않은 예산이 필요하며,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하나, 종전 구조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여기서 300%를 올렸다고 해도 금액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특별회계예산은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의 특정세입만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편성방식⁴⁶⁾이다. 특별회계예산은 기금처럼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신속적인 예산편성도 불가능하며 재원마련에 민간의 참여가 곤란하므로 당해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예산을 특별회계예산에 의하여 편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⁴⁷⁾

기금은 일반·특별회계예산 방식에 따른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⁴⁸⁾을 지칭하며, 특정한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운용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히 자금을 잠식하지 않고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예산과도 구분된다.

43) 이상원, 전계논문, 98면

44) 이상원, 전계논문, 98면

45) 기획재정부 측 주장

46) 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47) 이상원, 전계논문, 99면

48)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⁴⁹⁾에서도 회원국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방식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외국사례⁵⁰⁾〉

	미국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네덜란드	호주 (New South Wales주)	일본	프랑스
관련 법령	1984. 범죄피해자법	1996. 범죄피해자법	1993. 범죄피해 보상기금법	1996. 피해자지원·회복법	없음	1990. 형사소송법, 보험법
운용 주체	법무부	검찰총장	법무부	피해자보상기금 법인	재단법인	법인
재원	벌금, 몰수된 보석금, 범칙금, 특별교부금, 형벌부가금	부가금 (surcharge levy)	출연금	몰수금, 범죄자산,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및 보상부과금(Compensation levies), 출연금	기부금, 자산수익 등	자동차보험 등 재산관계 보험에 부과된 세금 및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금액	1조9,210억원 (136,010만달러, 2006. 적립금)		1993. 설립 시 299억원 (15,500,000유로) 출연됨	593억원 (61,000,000달러, 2008. 적립금)	662억원 (4,431,164,728엔, 2007. 자본총액)	연간지급액 2억5천만유로 상당(2007년)
사용 내용	-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 - 아동학대/긴급한 테러 방지 등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	위로금, 장학금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
지원 내용	폭력범죄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 가정내 폭력 행위 포함) 피해 치료비, 일실손해, 장례비, 정신치료비 포함	폭력범죄를 포함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피해자 치료비, 일실손해, 부양료, 장례비, 장애회복비용	고의로 인한 폭력 범죄 피해 물적·정신적 피해 회복비용 (치료비, 일실손해, 장례비, 법률구조비, 기타 합리적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	폭력범죄 (협박, 상해, 강도, 공갈, 성폭행, 유괴, 살인 등) 피해 치료비, 정신 치료비, 장례비	폭력범죄 포함하여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피해 위로금 : 50~15만엔 장학금 : 2만3천엔~2만9천엔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49)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s and Abuse of Power)'

50) 자세한 내용은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위 19)의 것 참조

IV.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1. 추진배경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가 절실⁵¹⁾하지만, 현재는 전문적 치료시설이 없어 협력병원으로 연계 해주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협력병원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지원⁵²⁾하고 있으나, 의료비지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여러 정신적·심리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함께 갖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절실하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설치⁵³⁾되어 있으나, 일반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강력사건 피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06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보상조치가 아닌 대화, 상담 등 정신적 지원과 위로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지원만으로는 완전한 심리적·정신적 치유에 한계가 있어 이와 연계하여 치유하는 별도의 심리적·정신적 치유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인 헌법 제30조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및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 법률개정 없이도 바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2009. 9. 10. 김성수 의원 발의안⁵⁴⁾)과,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2009. 12. 15. 박민식 의원 발의안⁵⁵⁾)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이미 이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적인 의견표명으로 피

51) 오경식, 전계논문, 101면

52) 전국 57개 센터 중 정신과 치료 가능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38개 센터, 81개 병원이고, 2008. 정신과치료비지원은 102건, 4,600만원이다.

53) 자세한 내용은 박광민,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 「범죄피해자와 인권」 2008년도 법무부 용역연구, 251면 참조

54)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계류의안 중 '범죄피해자구조법안(김성수의원 등 14인)' 참조

55) 7) 참조

해자보호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쉼터제공, 심리치료, 재활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2010. 7.경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2. 설립 및 운영방안

가. 피해자복지센터 규모 및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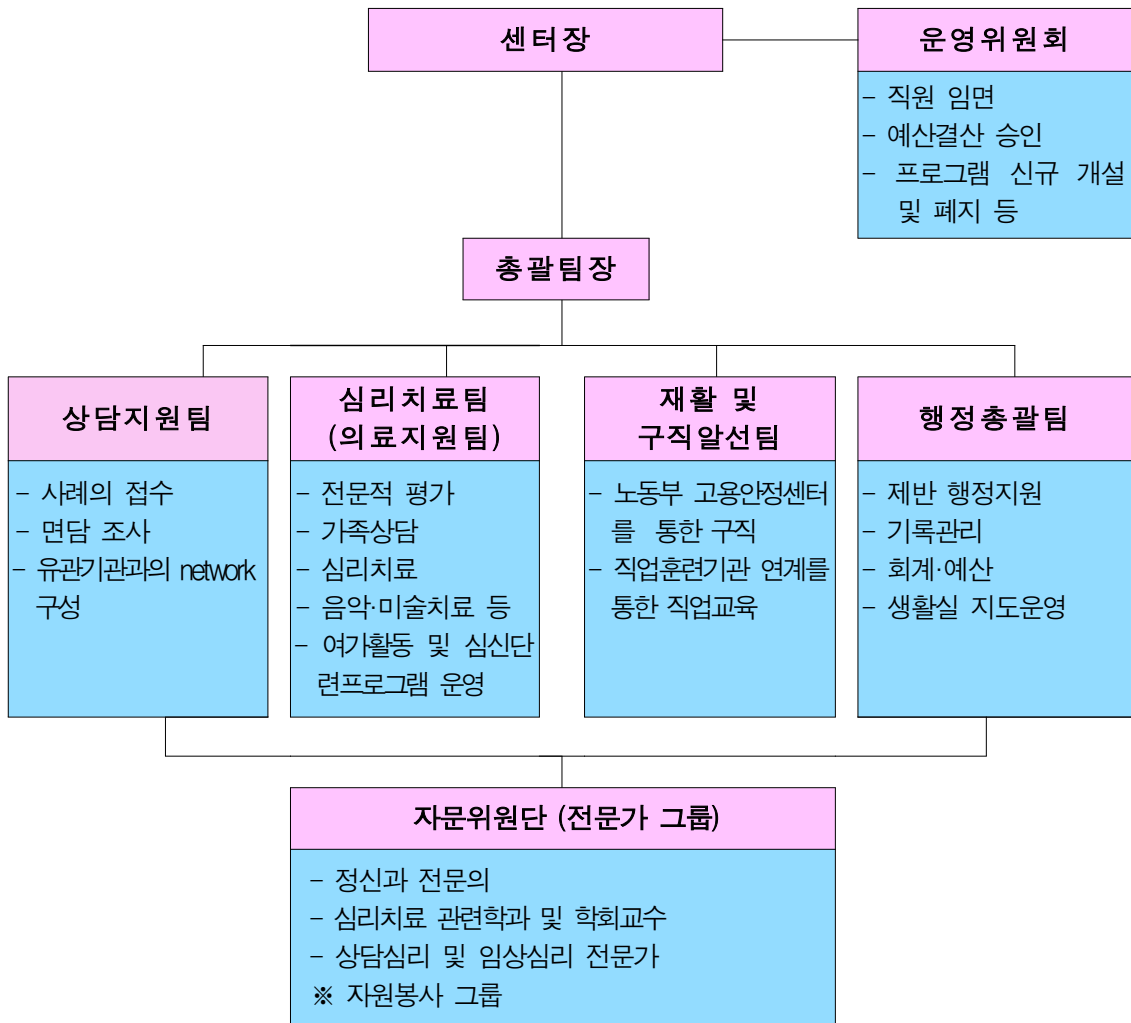
센터의 건물은 접근성, 인지도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이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를 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를 두고 정신과 전문의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가)계약 형태의 협약을 체결한 비영리법인(단체))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재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구상중인 안을 소개하면 총괄팀장, 상담원, 임상심리사, 생활지도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비롯한 상근직원들과 정신과 전문의로 비상근직원으로 둘 계획으로, 주요 시설로 심리치료실, 임시보호시설(여성용, 가족용, 남성용),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 조직구성안

참고로 센터의 활동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는 센터의 조직을 그려보면 보다 명확히 이해할수있을 것이다. 현재 구상중인 안을 토대로 센터의 조직구성을 가상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3 : 센터 조직구성 예시〉



3. 이용대상 및 예상 운영절차

이용대상자(적격자)는 ① 살인, 강도, 상해, 화재 등 범죄로 물적·인적 손실을 입고 (고의·과실 물문)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범죄충격을 잊기 위해 가능한 한 범죄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③ 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 등이 될 것이다. 다만, 피해자복지센터의 주기능이 심리·정신적 치료임을 감안하여, 치료목적의 입소자를 타 목적의 입소자보다 우선시키며 기초생활보장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입소에 우선권을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소와 이용절차는 먼저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1차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

하되, 입소여부 판단은 어느 정도 정신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점과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 전국의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사(또는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인에 의한 면담을 통해 대상자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단순상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맡기고, 정신과적 치료(약물)가 필요한 사람은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료케 하며, 피해자복지센터는 계속적이며 집중적인 전문적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위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 후 피해자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인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2차 심층 면담을 거쳐,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최종 입소결정하고 본인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때 피해자복지센터는 증상의 경중과 치료의 긴급성, 수용가능인원 등을 감안하여 입소일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 접견기회나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필요시 피해자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될 것이다. 만약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문의한 경우에는 범죄발생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센터는 증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통원 여부) 등을 결정(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자문위원단 자문을 거침)한 후 본인에 통보한 후 시행하게 될 것이다.

〈표9 : 위탁 사업 내용 (안)〉

사 업	내 용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조사, 피해상황 청취 및 지원방안 강구 -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 전문적 심리상담 및 평가(필요시 전문의 치료연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음치료, 갈등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가족역기능 치료, NLP (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심리치료, 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심리치료 등 ※ 1주~8주 프로그램(진단평가 후 연장가능) - 피해자 상대 범죄피해자 심리 및 회복관련 교육 - 외부기관 강사 초빙 또는 관련기관 교육훈련 등 알선 -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 음악회, 미술관 관람, 여행 등 주선 - 범죄피해자 발견 및 안내, 방문치료 - 피해자 자조 모임 등 지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활 구직 알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 사업 - 범죄로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 실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활교육 - 직업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생활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숙소 제공 및 관리 ※ 최장 2개월(진단평가 후 필요시 연장 또는 통원치료 가능) - 남성실, 여성실, 가족실 등으로 구분 - 입소자의 생활안전 보호와 퇴소 시 가족인계 등 보호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그룹(자원봉사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자문 -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 피해사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정보 수집 및 분석 - 치유완료 후 자원봉사자에 의한 계속적 사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복지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종사자에 대한 피해자심리 및 회복관련 교육 - 피해자 상담치유 관련 연구 - 상담일지, 치유경과 및 결과 등 기록 및 통계관리

V.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1. 추진배경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특히 주거에 관하여는 ① 주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는 경우(방화 등), ② 범죄에 대한 기억으로 주거지에서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경우(살인, 강간 등), ③ 주거지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강도, 절도 등), ④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등 주거지에 피해자가 거주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안정된 주거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확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극복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도,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단기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보호시설로 ‘스마일 복지센터(가칭)’이 2010년 7월 개소 예정인 반면, 장기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기 주거 지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방향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책임 관청은 국토해양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역시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긴히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각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위 ‘보급자리주택’ 사업 전개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장애인(보건복지가족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가정폭력피해자(여성부)의 경우 모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비슷한 성격인 범죄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법

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방안

이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저소득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연간 약 5만 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⁵⁶⁾.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장애인 등과 같은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6호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개정안 마련을 통하여 가능하리라 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10호 신설(예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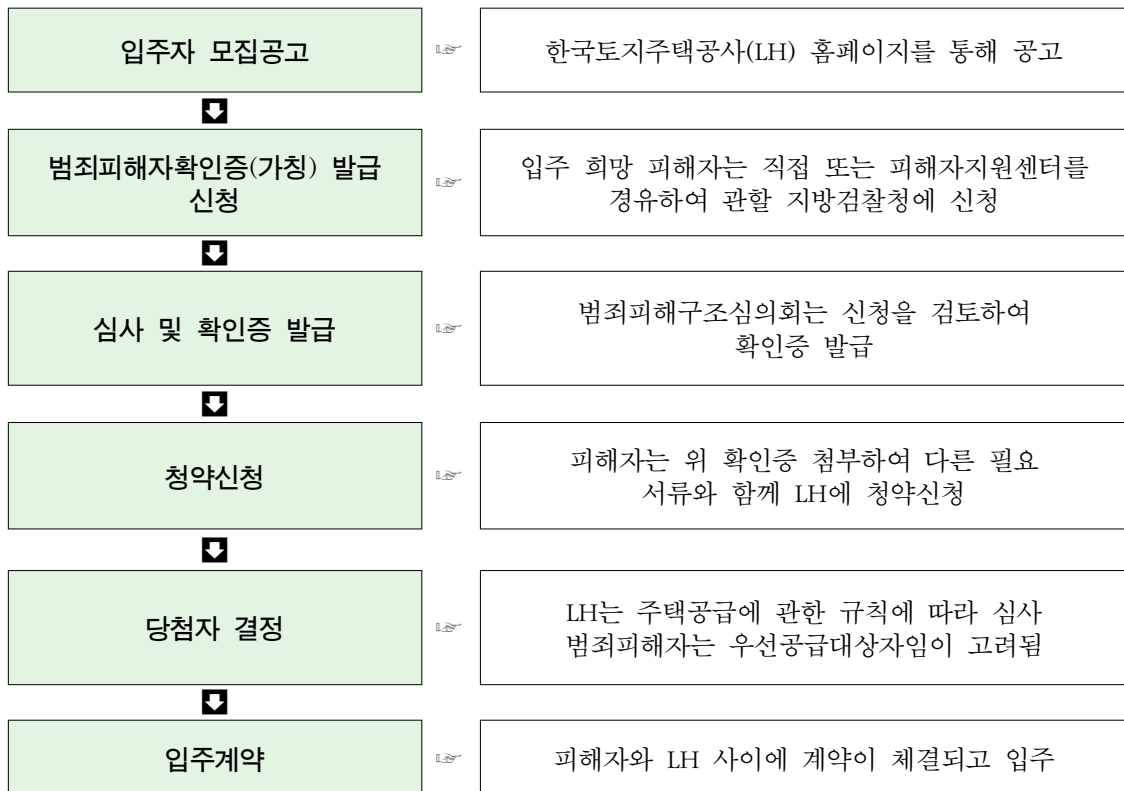
지원대상 범죄로는 범죄로 인하여 주거지를 잃거나, 범죄의 내용상 기존의 주거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부적합한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화와 주거지에서 살인, 강도, 강간(성폭법 포함)이 발생한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되, 학교폭력·사기·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같이 무주택자임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를 토대로 예상 인원을 추계하여 보면 약 200명이 추정된다.⁵⁷⁾

5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57) 살인, 강도, 강간(성폭법 포함), 방화 사건의 총 피해자는 2005~2007년 18,583명, 19,776명, 20,361명으로 평균 19,573명이고, 2008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중 살인 약 40%, 강도 약 21%, 방화 약 45%, 강간 약 28%가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전체의 약 30%)되므로 이를 통하여 계산하면 5,480명에 이르며 2006년도 조사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약 8.7%가 주거지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에, 476명(5,480명 X 8.7%)이 된다. 또한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 가구의 차가 비율은

선정은 현재 각 지방검찰청 별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활용하되, 우선공급대상자 선정이 되려면 ① 범죄피해자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② 범죄로 주거지를 잃었거나 정신적 후유증으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이에 임대주택 지원과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및 운영 절차 규정을 위한 법무부 훈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4 :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나.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방안

이는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와 같은 요보호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나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연간 약 2만호를 공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모델로 삼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의 경우 2007~2012년까지 총 5,173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453호(매입임대 119호, 전세임대 314호)가 공급된 상황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입주대상자이며, 이와 별도의

41.3%로 나타나 196명¹⁾(476명 X 41.3%)으로 추정

훈령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도 공급대상이다. 위 둘의 차이는, 대상자의 파악 및 입주 신청의 관리를 전자는 시·군 구청이 담당하는 한편, 후자는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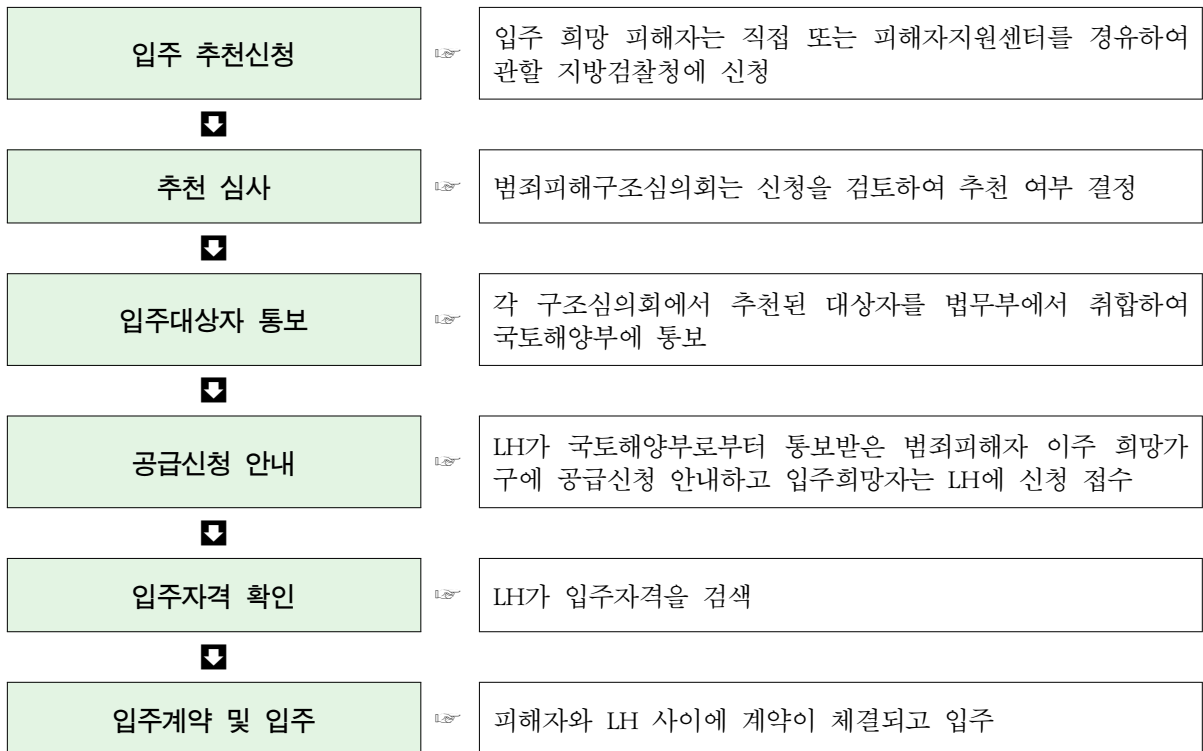
범죄피해자의 경우 현재 법무부·검찰을 통해 관리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국토해양부와 협조하여 가칭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법적근거, 절차 규정을 위한 법무부 훈령 제정 필요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그것을 다른 훈령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범위는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긴급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3%를 고려하면(476명 X 3% = 14명) 연간 20명을 예상 최대 인원으로 추계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그림5 : 매입임대 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4. 향후 예상 추진 일정

우선 2010년 3월말까지 법무부 계획안을 확정된 후 같은 해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및 공급 계획안 정부안 최종안 확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7월말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8월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기주거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지원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Ⅵ.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초기지원 강화

1. 추진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연쇄살인사건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빈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피해자 발생 현황은 2008년도 기준으로 1,218,164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고, 그 중 특히, 살인·강도·성폭력 등 5대 강력범죄 피해발생은 같은 기간 264,135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 피해발생만도 5,807건에 이르러 전년대비 6.5% 증가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짐과 아울러 증가추세에 있다.

그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종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겪게 되고, 심각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알콜 등 약물중독, 자살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이러한 피해상황은 사법기관이나 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2차 피해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잠재적인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형사사법절차가 주로 범죄자와 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사의 방법이나 객체로 처우 해오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시정해 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의 주체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2008년 제4회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단체의 연계체제 강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정부 각 부처의 보조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 단체 간의 횡적 연계

체제 구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의 영역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인 정부 각 기관 간의 횡적·종적 연계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는 그동안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대체로 양적 성장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고, 정부 각 부처 간의 유기적 연대나 협조관계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그간의 국가 및 민간단체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데서 알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년)의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범죄피해자의 44.2%가 전혀 또는 거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고, 23.3%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이상이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나아가 관련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도 체계적인 연계망으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⁵⁸⁾

58) 참고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관 부서	업무	법적근거	대상자	주요 지원	예산(2008년)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법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와 유족	•구조금 사망-1,500~3,000만원 장해-600~3,000만원	•14억 1,100만원 (국가 실지금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개 (법무부 등록 민간단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한 없으나, 주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상담 •생계비·의료비 지원 •신변보호, 범죄현장 정리	•국가 12억원 •지자체 40억원 •기부금 등 자체 기금 29억원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471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신고, 상담 •보호시설, 법률구조 연계	•106억 6,700만원 (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50%)
	가정폭력·성폭력피해보호시설(83개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업무, 피해자 일시 보호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신변보호	•53억 500만원 (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50~70%)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외과·산부인과 등 치료, 응급 키트 조치 등) •수사·법률지원	•25억5,300만원 (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50~70%)
	해바라기아동센터 (10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전문피해상담 •심리평가 및 의료지원 •소송지원 •가해아동 교정사업 등	•68억 2,700만원 (국비 100%)
	여성긴급전화 1366 (16개소) ※ 긴급피난처 71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피해자	•피해신고, 상담 •상담소·보호시설, 법률·의료 구조 연계	•31억 600만원 (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50%)
	의료지원	•성폭력범죄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	•13억 8,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피해자 	(단, 300만원 초과시 심의)	(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50%)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법률구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억 1,400만원 (여성발전기금, 국비10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억 1,900만원 (복권기금, 국비보조율 50~70%)
국토해양부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한민국 거주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사망- 최고 1억원 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담금 1,311억원*(2008년 기준) * 위 금액은 정부 예산이 아닌 자동차보유자가 내는 책임보험료의 1%를 각출한 금액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1~4급)인 사람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피부양노부모(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이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 <p>*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및 가구당 재산 수도권 8,000만원 (기타 7,400만원)이하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보조금 -월 1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0만원 장학금 - 분기 10~30만원 피부양보조금- 월 15만원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성매매방지및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생계급여(월13만 3천원) 의료급여(월16만 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급여 전체 예산 66,952억원(국비)

2.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일반범죄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의 연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연 1회 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연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른 연계이기도 하나 다소 의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법원과의 연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재판절차상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간 역할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 등 상호간 사건수사 등을 통한 연계가 구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국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 및 지원담당관, 전국 경찰서 피해자서포터 및 케어팀(CARE 팀) 등과의 연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범죄수사 및 지휘체제 등을 통한 방식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나, 수사초기 단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지원업무에 나서고 있고, 검찰은 세간에 알려진 주요사건 외에는 대부분 수사 지휘 또는 송치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인식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피해상담 및 응급조치,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형사절차 등 안내, 신변보호, 범행현장 정리, 형사조정 등의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센터가 전국에 구성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시설, 가정폭력피해자시설 거주자를 시설수급자로 보호	원) •교육급여(중고생 입학금·수업료) •해산·장제급여(50만원)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 중한 질병 및 부상 - 가정폭력 등	•생계지원(4인 90만원) •주거지원(4인 32만원) •교육지원(입학금·수업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100만원)	•긴급복지 전체 예산 375억원(국비)	
위기가구 무한돌봄(경기도 자체사업)	• 경기도 조례	긴급복지 사유 포함, 최저생계비 이하 120% 저소득가구	생계지원(4인 66만원)	•(09년) 435억원	

선도적 민간기구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그 제도적 함의가 적지 않음에도, 주로 검찰단계에서 송치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나. 특정범죄(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폭력·성매매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연계 외에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⁵⁹⁾를 통한 연계가 있다. 이는 여성부·경찰·지자체·병원·법률구조공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특정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 등의 통합지원 활동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등을 통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 몇 개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고, 지원기관이나 시설, 민간기구가 난립하여 그 효율성이나 긴밀성, 중복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 긴급전화센터(1366)⁶⁰⁾,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1577-1366)를 통한 연계망이 있는데 여성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중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구조 등 위기개입, 타 기관 연계 등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6개 국어로 지원하고 있다.

3.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가. 통합적인 연계망 구축에 대한 인식 재확인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통합적인 연계 중심축으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미 부여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각 부처별 1년 단위 시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보호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9) 자세한 내용은 박광민, 전계논문, 257면 참조

60) 자세한 내용은 박광민, 전계논문, 260면 참조

또한 보호위원회 산하에 상설 사무국을 두거나 또는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각 부처별 또는 민간기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연계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효율성과 긴밀성을 높여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지원기관 중복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인 예산 및 인력 절감을 위해 각 기관·단체별로 개발·운영중인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스템을 개방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수사초기 단계의 검찰 및 경찰 간의 연계강화 필요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의 즉시성과 현장성, 종합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찰의 담당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게 피해상황 및 조치 필요사항을 알려 조기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한 경우 직접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경제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 범죄현장 정리 등의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원과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때 경찰출신 인사 등을 많이 위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통합 접근망 구축검토

일반범죄나 특정범죄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등 기관이나 민간기구 등의 단체가 많고, 연락처도 다양각색이며, 임무와 역할도 다양하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각 보호·지원관련 기관·단체별로 고유의 기능과 연락처, 존재가치 등을 존중하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관계 기관·단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연락처자료집을 제작·배포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연락자료집을 활용하여 각 기관·단체별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매뉴얼을 종합하여 정부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황이 없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 기관·단체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파악해 연락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의 통합전화나 통합 인터넷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상호간에 연계가 되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일 것이므로 통합 콜센터나 통합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⁶¹⁾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단체 고유의 기존 연락망이나 기능은 존치시켜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 콜센터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합 콜센터 및 홈페이지는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Ⅶ. 마치며

이상 금년도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될 경우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금을 통한 충분한 재정보보는 구상 중인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개선, 피해자복지센터 건립 및 통합망 구축 등의 토대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통하여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공동의 책임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올해는 피해자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국민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61) 박광민, 전계논문, 319면 이하

별첨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상의 피해자 장애등급표
신체상의 장애등급기준 (제2조관련)

등급	신체상의 장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애 이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애 이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는 경우 6.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애 이외의 장애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등급	신체상의 장애
제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5.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는 경우
제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고막의 반 정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
제8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경우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7.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 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9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	신체상의 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제10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제1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4. 고막의 반 정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경우 9.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경우
제1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7.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등급	신체상의 장애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지손가락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경우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주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이 못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못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신체장애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애로 본다.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발 행 / 2010년 1월

발행인 / 박 상 기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 575-5285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주)이환기획인쇄

전화 (02) 764-1116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